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2.3.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2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1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0
III. 세부 추진계획	25
1. 전략목표 I	26
2. 전략목표 II	60
3. 전략목표 III	97
4. 전략목표 IV	135
IV. 환류 등 관련계획	166
1. 이행상황 점검	16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70
3. 변화관리 계획	17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78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82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88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승인) 심사와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 공영방송과 편성·제작 분야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총 180개국 중 42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방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섭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영방송사의 공적책무 이행에 대한 실효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관련 해외 사례 분석과 협약 당사자인 KBS 및 학계의 논의를 통해 공적역할, 운영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

- '17년 이후 지연된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과 콘텐츠 편성확대 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추진하고, UHD 혁신서비스로 시청자 편익을 높이는 정책방안('20.12월)을 마련했습니다.
- 정책방안에 따라, '21년 KBS 제주 UHD 방송 도입, '21.7월 다채널 시범방송을 실시하였으며, '23년까지 UHD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UHD 주파수를 활용한 다채널·이동형·방통융합서비스를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및 투자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재난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21.8월, 국무회의 보고)하여 일상화·국지화되어 가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지상파방송, 종편·보도채널 등의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21.11월)하여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방송의 공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 정보 공유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신설('21.8월) 및 신규 예산('21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10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05년), 광주('07년), 강원·대전·인천('14년), 서울('15년), 울산('16년), 경기('19년), 충북·세종('20년)

- 코로나19 등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온'을 통한 온라인 미디어교육을 활성화('20년 128개→'21년 392개 강좌)하는 등 국민이 보다 쉽게 미디어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청소년들의 미디어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자유학기제, 동아리 연계 미디어교육,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교육과정 등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20년 400개교→'21년 407개교)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소외지역·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체험을 확대 제공('20년 204회→'21년 256회)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소식을 다루는 마을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을 확대 지원했습니다.('20년 80개→'21년 90개 마을)

< 마을공동체 미디어활동 우수사례 >

<p>▲ 울산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 <호계마을 다함께 마을 방송></p>	<p>▲ 충북괴산 '문화학교 숲' <괴산에서 만나고 기록하는 우리 이야기></p>	<p>▲ 철원ON동네방네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철원ON동네방네></p>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5G서비스 상용화와 전용 단말기 출시로 인한 시장경쟁 과열 상황 속에서도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였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일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였고,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 확대 및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였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시 이용자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하였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국민의 삶에 지원금, 대출상품을 가장한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스팸전송자의 유무선 전화 가입 제한,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스팸발송 소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 은행사칭 스팸 신고·탐지량 : 16만건(21 1분기) → 29만건(21년 2분기, 81% 증가)

-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 위반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21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운영 결과 >

구분	제1차(6.30)	제2차(8.19)	제3차(9.27)	제4차(10.15)	제5차(11.16)	합계/평균
세부구분	이론1	이론2	실습1	이론3	실습2	총5회
수료자	116명	133명	12명	108명	15명	384명
만족도	87.5점	86.8점	87.2점	86.7점	79.5점	85.5점
방식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유통방지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작성·공개토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 및 불법촬영물등 공공 DNA DB를 구축제공 하였습니다.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신규 제도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백신 허위조작정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과 같은 무인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정보 비대칭이 지속되어 유관기관 업무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진행, 계층별 맞춤형 교재를 제작·보급 했습니다.

< '21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인원 (단위:명) >

구 분	노년층	일반인	청소년	농어민	다문화	장애인	온라인	계
대면	27,240	94	0	2,855	40	765	0	30,994
비대면	5,262	6,802	1,027	260	1,525	0	710	15,586
합 계	32,502	6,896	1,027	3,115	1,565	765	710	46,580

-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21.1월)하여 대국민 접근 편의성을 높였고, 다양한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마다 폭증하는 통신분쟁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21.6월)하여 '21년도 분쟁해결률이 '19년도 6월부터 '20년도까지 53%보다 22.6p% 상회한 75.6%를 기록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접수 건수 대폭 증가 ('19년 155건 → '20년 572건→'21년 1,170건)



- 이용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22.1월)하여 유형별·지역별·사업자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제공하였으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했습니다.
- 국내·외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및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용자가 급증한 부가통신 사업자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 ’20년 28개 사업자 → ’21년 40개 사업자
 - PC 및 모바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협찬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보험 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시청자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21.10.12.~’22.1.10.)하고,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22.2.23.)하는 등 방송사의 시청자 정보 수집 프로그램 제작에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 가이드라인’(‘19.1월 시행) 이행점검,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배포(‘20.11월) 등을 통해 방송시장의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정('20.12) 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방송평가 규칙에 반영*('21.12)하여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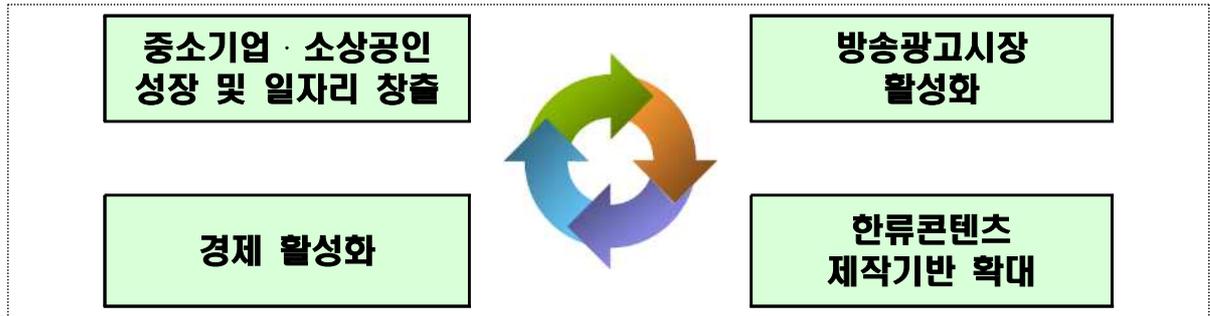
*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공표 여부, 담당부서 지정·공지 여부 등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점검방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21.11월)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1.4월)하여 1973년 이후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매체간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21년 9월)을 통해 형식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21년 방송광고 시장에 88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여 '20년 대비 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12.9%, 소상공인은 31% 상승하는 등 지원기업 성장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방송광고 제작지원 선순환 구조도>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17년 기준 100,655명)에게 맞춤형 TV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21년 누적보급률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돕기 위해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방송법 제69조)에 따라 방송사(130여개)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편성비율을 달성하도록 제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미디어 환경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全) 국민의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21.10월)하였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도입취지·실효성과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등 편성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1.4월 방송법 시행령, '21.6월 고시 개정)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규제체계 확립

- 미디어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한편, 신규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서비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제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영방송사와 지속적인 논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협약(안)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종편PP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상파 재허가 시,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심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재허가 여부 결정 및 조건을 부가하겠습니다.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체험을 확대 제공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방송이 지역방송의 본래 기능인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밀착형 서비스 경쟁력 강화, OTT 등 신유형 콘텐츠 제작지원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방송이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상황실 운영으로 24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재난방송을 통해 대피소 정보 등을 지도에 그래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시스템(KBS)’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CCTV 영상,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재난 위험지역의 재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송사, 방재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어통역사 재교육을 지원하여 재난수어방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방송 전문통역 인력풀을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이용사-이용자 간 다면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세부유형 및 판단기준 등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 및 시행하겠습니다.
-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을 엄격히 집행하겠습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매년 폭증하는 분쟁조정신청건수에 대응하고자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30명),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연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 마련

-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윤리원칙에 대한 실행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메타시대를 맞아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월)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한 실행지침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핀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보안 이슈를 반영하여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1인 미디어시장의 확대로 일부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확산됨에 따라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주체가 팩트체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달의 팩트체크' 카드뉴스 연재 등 팩트체크 일상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공모전을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적발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비대면 사회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업자의 자율적인 인터넷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업자 및 협·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앱 서비스와 선택 탑재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12월)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OTT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제 OTT 포럼을 개최(11월)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 시 전략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22~’23).
 - 방송법에서 허용된 7가지 유형만 가능하였던 현행 규제를 프로그램 내·외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22.12월)
-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권 보호를 병행하겠습니다.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2.하반기)

□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지역민방, 경제전문채널, 종편PP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22년 하반기)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개정안을 도출하겠습니다.(7월)

□ 소외계층 미디어복지 격차 해소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후속으로 당해 연도 추진성과 및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 시·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방식 개선 등 정책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실시간·비실시간(VOD) 장애인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형 콘텐츠, 장애인교육방송물 등을 제작 지원하고,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저소득층에서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음성인식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고 자막-수어변환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고도화·안정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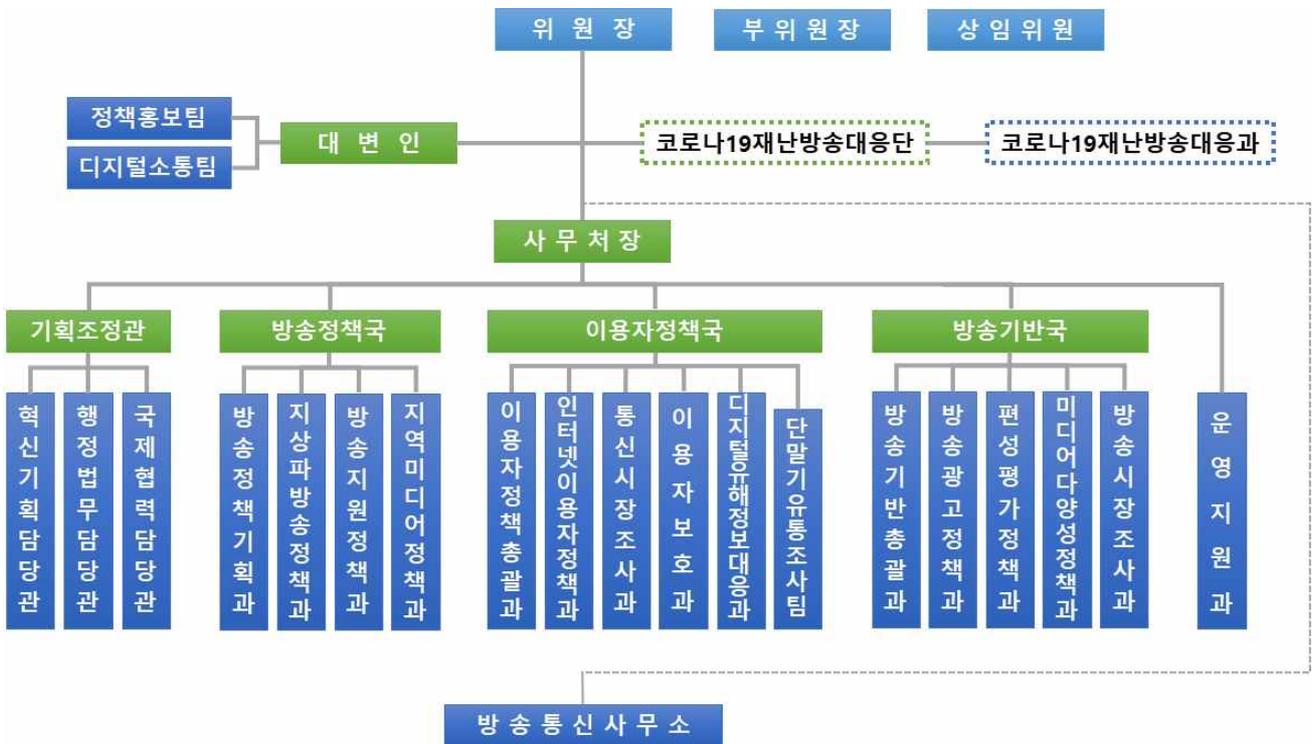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 1처 3국 2관 18과(담당관) 3팀 / 1소속기관



(2) 인원(정원) : 281명 (본부 235명, 소속기관 46명)

구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5	6	5	14	17	74	114	235
소속기관	-	-	-	1	-	5	40	46
계	5	6	5	15	17	79	154	281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424.4	2,561.4 5.6	3,614.3 41.1	3,703.0 2.5	3,808.0 2.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424.4	2,561.4 5.6	3,614.3 41.1	3,703.0 2.5	3,808.0 2.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219.5	239.2 9.0	255.9 7.0	273.8 7.0	293.9 19.2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34.9	44.1 26.5	45.4 3.0	46.8 3.0	18.2 3.0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2,170.1	2,278.1 5.0	3,313.0 45.4	3,282.4 2.1	3,466.8 2.5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83.4	507.6 5.0	741.2 46.0	778.9 5.1	804.1 3.2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83.4	507.6 5.0	741.2 46.0	778.9 5.1	804.1 3.2
【일반회계】¹⁾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83.4	507.6 5.0	741.2 46.0	778.9 5.1	804.1 3.2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83.4	507.6 5.0	741.2 46.0	778.9 5.1	804.1 3.2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941.0	2,053.8 5.8	2,873.2 39.9	2,924.1 1.8	3,003.9 2.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941.0	2,053.8 5.8	2,873.2 39.9	2,924.1 1.8	3,003.9 2.7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941.0	2,053.8 5.8	2,873.2 39.9	2,924.1 1.8	3,003.9 2.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941.0	2,053.8 5.8	2,873.2 39.9	2,924.1 1.8	3,003.9 2.7

※ '21년 실적, '22년 예산, '23년 이후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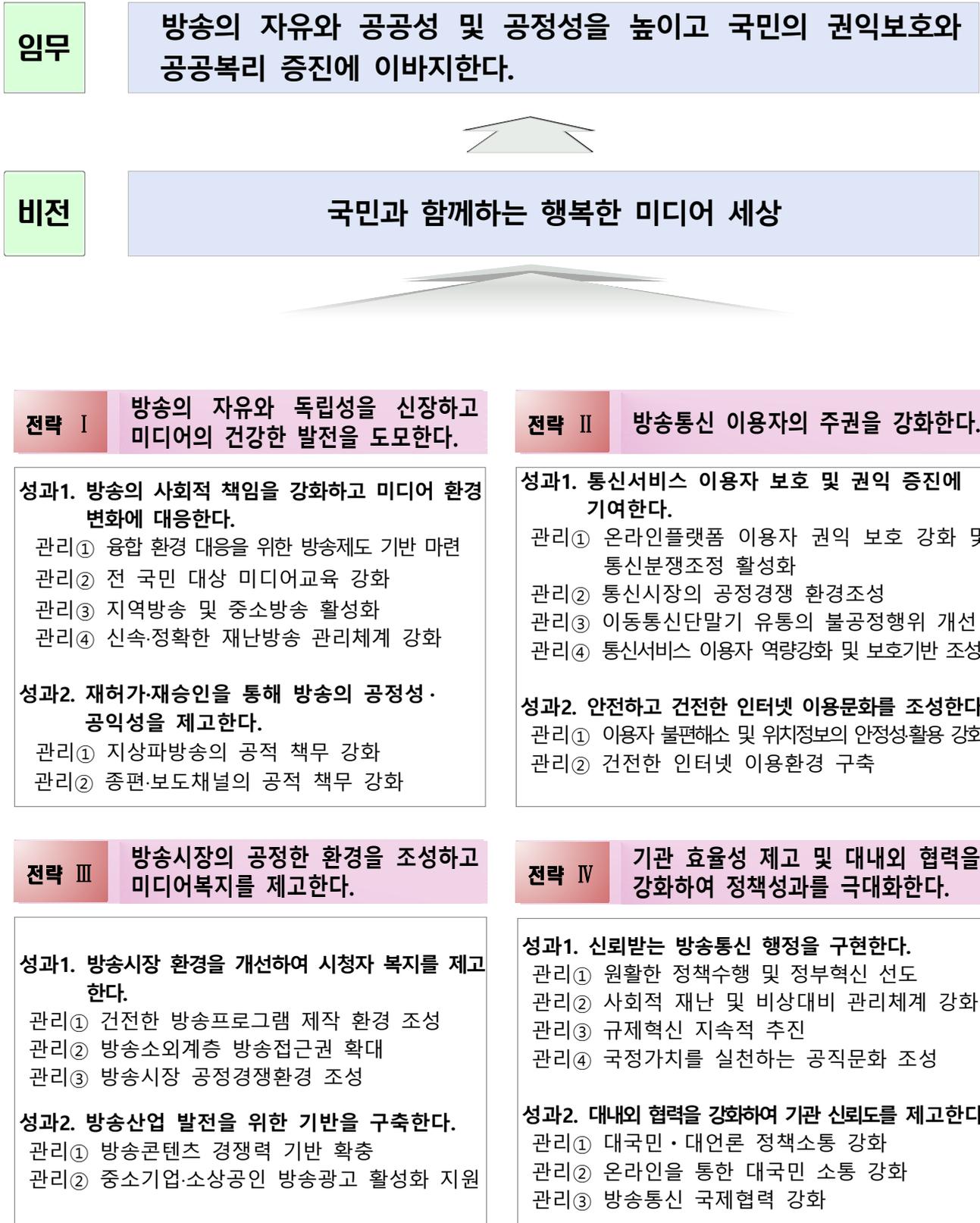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확대·보장하는 절차 마련
- 지속적인 지역방송 콘텐츠의 제작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 및 지역방송의 자생 기반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 마련 및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 설명회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 유도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세부유형 및 판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
-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윤리원칙에 대한 실행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
- 우수방송프로그램 시상 및 방송사의 자율적인 심의규정 준수 유도,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건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

-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외계층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이용·활용 편의 제공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실태조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최적의 개정방안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방안 모색
- 국내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광고·편성 분야 규제 개선 및 해외 시장 조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등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3	8	10	24	4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국정 70-1, 업무 2-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70-1, 정책61-2 업무 3-3 한국판 뉴딜 3-2-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 70-2 업무 2-3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70-1 업무 2-3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업무 1-1, 1-2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국정 33-9 업무 3-3, 4-1, 4-4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31-6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국정 31-6 업무 4-1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국정 33-9 업무 3-3, 4-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국정 70-5, 33-9 정책 61-1 업무 4-4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 4-3, 국정 70-5, 업무 3-1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70-1, 디지털포용 2-1, 업무 4-3 한국관뉴딜 3-2-3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국정 70-4, 업무 1-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70-4, 디미생 1-1, 4-2-1, 업무 1-2, 1-3, 2-2, 대통령·총리 지시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일자리 59-2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적을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업무 1-2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TT 서비스 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미디어시장의 다각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규제 형평성 제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디어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제 마련 필요성 증대
- 미디어의 제작·활용 및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산불, 집중호우,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재난이 국지화·일상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이 필요
-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를 제고하고, 차세대 방송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필요
- 종편PP가 시청률·광고 매출 등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또한 높은 상황이며, '20년 재승인 시 관련 조건을 엄격히 부가함에 따라 이행실적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 그간의 성과

- 방송·통신·법률 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정책방안 마련 추진반' 운영을 통해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기본방향 및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방안, 법 목차(안) 등을 마련

-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등의 범위 및 개념, 평가체계와 재원지원 방안 등을 논의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체험을 확대 제공하고 방송 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유통활성화 및 교육·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방송대상 등 14개 프로그램 30회 수상, 시청자 만족도 향상(18년 86.4점→21년 87.3점) 및 국내·외 판매 수익(18년 8.25억→21년 8.5억) 지속적 창출
-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방송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 고시 및 매뉴얼 개정, 재난주관방송사(KBS) 역할 강화, 각종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결과로써 재허가 조건을 부가·점검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의 공적책무의 이행을 도모
- 종편·보도PP(6개사)를 대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조건의 방송사별 이행 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방송과 OTT서비스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
-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엄격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더 많은 시청자가 실감형 초고화질 콘텐츠와 다양한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UHD 방송망 확대 및 다채널서비스 시범방송 도입 등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
- '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개국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체험을 확대 제공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
- 지역방송의 지역 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제작 분야 확대를 통해 지역성 구현, 공적 책임 강화 및 신규 미디어 콘텐츠 대응 등 지역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난방송 고도화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방송사·방재기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지상파, 종편PP 재허가(승인) 시 부가한 조건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재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 제고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 재편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 미디어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로 누구나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익채널 선정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전동의 절차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을 강화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사업자의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② 미디어교육 이수율 ③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시청·청취자 만족도 ②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수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종편·보도PP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전략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 마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와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미디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미디어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 지역방송의 지역 미디어 역할 수행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역량과 지역 미디어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	-	14	23	23	23	선거가 있는 해인 '22년(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24년(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공정성 제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20년 실적과 같은 제재건수를 설정 ※ 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실시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통신 융합의 심화, OTT 등 인터넷기반 동영상서비스의 급격한 성장 등 미디어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
-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의 증가 등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나, 수신료 정체,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어 공적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0개 광역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미디어교육 서비스의 격차 발생 우려
-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영향력 하락 및 존립기반 약화 등 지역방송의 위기

□ 갈등요인

-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등 신유형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 심화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및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
- 협약제도 도입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자율성 확보 요구와 시청자의 공영방송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 요구가 대립될 것으로 예상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추진 중이나,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방송환경 및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나 지역·중소방송의 경영환경 열악 및 정부의 예산 지원 한계로 시도가 어려움

□ 갈등관리계획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 공영방송사업자와 언론·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공영방송 협약체계 수립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건립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23년)에 따라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

(1) 주요 내용

- 방송을 중심으로 한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제를 마련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 콘텐츠 제작 교육, 방송 제작시설·장비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교육,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및 지역방송의 자생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신유형 등 다양한 제작지원 분야 신설·확대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마켓 참가 등 관련 지원 체계 강화
-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신규	100	100	100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와 재난방송 수신지원 관련 과제 목표 달성 결과 측정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 0.5 ※ 5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92.6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 × 0.5 ※ '22년 목표 : 60개	개별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OTT 등 융합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체계를 통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원칙 마련 필요성 증대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는 '21년 90만 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국 10개 광역권만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미디어교육 서비스의 편차 발생
- 지역방송은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방송사업 매출, 광고매출의 지속적인 감소 등 경영 위기에 따라 방송사업 외의 지역 문화사업 등 타 사업의 의존도가 높아져 지역성 훼손이 우려
- 재난의 국지화·일상화, 재난유형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미흡

□ 갈등요인

- 지상파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규 미디어 간 규제형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
- 지역방송사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및 다양화 등이 필요하나 경영상의 문제로 투자에 소극적
 - 지역방송 사업자는 존립 기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 존재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에 대해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시설관리기관의 예산확보 미흡 및 관심부족으로 터널 등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갈등관리계획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구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통합 법제안을 마련하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설명 등으로 통합 법제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23년)에 따라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방송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방송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I-1-①)

□ 추진배경

-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 미디어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비스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 형평성 및 효율성이 저하
 -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통합법제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이 필요
- 최근 대규모 재난의 발생, 허위·조작정보의 증가 등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방송시장 변화로 인한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 소홀이 우려
 - 공·민영방송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재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공영 방송에 특화 적용 가능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규제 형평 제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OTT 서비스를 함께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마련 추진

- 이용자 관점에서 유사한 방송과 OTT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마련
- (공영방송 협약체계 마련) 공영방송사와 실무협의, 언론·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공영방송 특성에 맞는 공적책무 부여, 이행 점검, 평가결과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 마련 및 법적 근거 검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청각미디어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정책연구' 제안서 공개	'22.3월	
2/4분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초안 마련	'22.5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관련 의견 수렴	'22.6월	
	공영방송 협약제도에 대한 실무논의	6월	
3/4분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관련 의견 수렴	'22.8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	7월	
4/4분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관련 의견 수렴	'22.10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종안 마련	'22.12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협약체계의 도입으로 시청자에 양질의 다양한 공적서비스 제공 가능
 - (방송사업자) 시청각미디어 전반의 규제 및 지원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제시되고 공영방송사업자의 역할 강화 기틀이 마련

○ 이해관계집단

- (기존 방송사업자 및 OTT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와 신유형 융합 서비스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신유형 서비스의 규제체계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기대효과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	-	100	9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법 정비 및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고 '20년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22년 목표치를 94%('21년 목표치 92%에서 2%포인트 상향)로 설정	① + ②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법 정비 추진율(0.7) 연구반 운영X0.2+대외 의견수렴 X0.2+법안 마련X0.3 ②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율(0.3)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실무 논의X0.1+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X0.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I-1-②)

□ 추진배경

- 미디어의 제작·활용 및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10개)를 통해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활용 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작 실습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 청소년이 미디어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동아리 등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

※ '21년 407개 학교 → '22년 429개 학교

- (마을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 주민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마을방송을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

※ '21년 90개 마을 → '22년 100개 마을

-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확대)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해 소외지역 대상 미디어 제작 체험 기회 제공

* '21년 2대 → '22년 8대 확대 운영

- (유아 미디어교육 운영) 유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연 50회)

- (온라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진로 특강, 영상 제작법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 운영을 활성화

* 미디온(edu.kcmf.or.kr) : 온라인 미디어교육 콘텐츠 공유·제공

-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개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등 개최

*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대전), 장애인 미디어축제(부산), 중딩영화제(광주)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22.1~12월	
	학교 미디어교육 및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22.3~12월	
2/4분기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 운영	'22.4~12월	
	유아 및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운영	'22.4~12월	
3/4분기	온라인 미디어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2.7~12월	
	지역 센터별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개최	'22.8~12월	
4/4분기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신규 구축	~'22.10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 (전 국민) 다양한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을 제고

-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 광역권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운영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

- (타 기관 미디어센터) 타 기관 소규모 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인프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허브 역할 강화

□ 기대효과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방송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제공하여 미디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자유학기제, 동아리 등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해를 제고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198	237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방송통신		181	221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발전기금		38	42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3.4	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62.4	81.5	90.6	97.3	기존 8개 센터(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경기) 이용자 수는 3개년 평균증가율(5.7%)을 상회하는 6.3%를 전년도 실적에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3년차 센터인 충북·세종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센터의 3년차 증가율(14.4%)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미디어교육 수료율(%)	88.2	91.4	93.7	94	최근 3개년도('19~'21년) 평균값(90.7%)에 3개년 평균 증가율(3.7%)을 반영한 94%를 '22년 목표치로 설정	(미디어교육 수료인원 / 미디어교육 수강인원) x 100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교육 수강인원 대비 수료한 인원 실적)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2.1	92.4	92.6	92.8	최근 3개년도('19~'21년) 이용자 만족도 평균값(92.4점)에 평균 증가율(0.27%)을 적용(92.6점),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0.2점을 상향한 92.8점을 목표치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E-mail, 전화 등)

* 미디어교육 수료기준은 대면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3차시 이하 교육 50% 이상 출석, 4차시 이상 교육 70% 이상 출석이며, 이러닝 콘텐츠 교육의 경우 80% 이상 진도를 달성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I-1-③)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 문화 정체성 및 지역 시청자 권익 확보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23)에 따라 지역 밀착형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제작 지원하여 다양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 추진
-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 콘텐츠 유통 시장 변화에 대응한 지역 방송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및 지역방송의 성장 동력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자체 제작역량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자 선정	2~3월	
	상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6월	
2/4분기	상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4~6월	
	상반기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6월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5~12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7~8월	
	하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7~12월	
	하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9~12월	
4/4분기	하반기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12월	
	국내·외 피칭포럼 참가 지원	11~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청자의 복지 향상
-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유통 활성화, 종사자 교육지원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이해관계자

-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미디어센터, 유관기관 등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방송환경 및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신유형 제작지원 분야 확대 및 OTT 서비스 확대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방송의 존립기반 강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40.3	45.3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40.3	4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 만족도	86.8	87.0	87.3	87.4	전년도 만족도 결과치(87.3점)와 만족도 결과의 한계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0.1% 상향하여 설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신규	184	최근 3개년 참가 마켓 출품 수 평균 증가량*을 고려하여 12% 상향된 184 건으로 목표치 설정 * 최근 3개년 증가량 : 약 12%, '21년 출품 프로그램 수 : 164개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사업결과보고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I-1-④)

□ 추진배경

- 국가차원의 방송재난 관리를 통해 방송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히 수습·복구하여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과 재난 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실시로 재난방송 질적 제고 및 공익성 확대
- 방통위에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 및 재난정보 공유 등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73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 인력 확충 및 한국수어 방송 강화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

- 재난방송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위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실시(KBS)	연중	
	재난재해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공유	연중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연중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연중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3월	
2/4분기	'21년 3~4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4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월	
	지역방송·지자체 재난방송 협력강화 업무 협약 추진	6월	
3/4분기	'22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9월	
	'22년 1~2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9월	
4/4분기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기능 개선	11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2월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12월	
	지역방송·지자체 재난방송 협력강화 업무 협약 추진	12월	
	'22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기술 컨설팅 완료	12월	
수 시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 대응기구 운영	상황종료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국가 혼란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방송서비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주관방송사의 역할·책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과 재난 취약계층을 배려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행정안전부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중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고 비상 시 체계적으로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불안감 최소화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1.36	7.53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11.36	7.53
-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2.0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6	0.36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8.80	4.97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송통신발전기금	40.20	40.20
▪ 재난방송 운영지원(307)		40.20	40.20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제작지원		1.54	1.54
- 재난 재해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지원		8.00	8.00
- 지리정보 융합 재난 그래픽 시스템 구축		3.90	3.90
- 재난미디어 활용 체계 강화		7.86	7.86
- 재난 CCTV 개방 활용		2.86	2.86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실시 지원		1.04	1.04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5.00	1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점)	-	신규	94.9	88.5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충을 위해 설정 ① + ② ①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목표 100명) × 0.5 ② 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 (목표 77점) × 0.5	내부자료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	신규	100	92	중요 방송시설 취약·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 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22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안전 점검 대상 총 시설 수(104개소)]×100	내부자료

성과목표 1-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엄격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무·공익성 등을 제고하고 지상파UHD 방송, 공동체라디오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접근성 확대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시청자 미디어 복지에 기여
- '20년 종편PP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의 이행실적을 엄격히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재승인 조건의 효율성 제고하고, 공익채널 선정 및 유료방송 (재)허가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를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100	97.2	99.5	92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엄격한 점검 결과 '19-'21년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다만, 지상파의 경우 '20, '21년 재허가시 난도가 높은 신규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어 방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92%로 설정 종편PP도 '20년 재승인 시 공적책임 관련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90%)보다 상향된 목표치 설정(92%)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times 0.5]$ $+$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text{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times 0.5]$	실적 점검 결과
※ '18년에는 과제 1-1-1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의 지표였으나, 목표-과제 체계 개편으로 성과목표 1-2의 지표로 변경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사 등의 장기연임 해소 방안 마련 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사업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건수 연 5건이하 유지(선거별 2건), 전문 외부 기관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방송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환경 악화
 - 경영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광고 영업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적 책임 훼손 우려
 - 특히,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방송사 차원의 제작 및 시설 투자여력 감소는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재허가·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21년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
 - 종편PP가 시청률·광고매출액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높은 상황

□ 갈등요인

-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곤란
- 종편PP 관련 정책은 국회·시민단체·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방송 산업 활성화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시 공적 책무 관련 사항을 적극 점검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지상파 및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사업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의견수렴 및 소통 절차를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I-2-①)

□ 추진배경

- 방송매체 다변화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심사 추진
 - 또한, '18~'21년도 지상파 재허가시 부가한 재허가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 필요
 - * 주요 조건 :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 협찬고지 관련, 경영의 독립성, UHD 편성실적, 외주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등
- '16년 지상파UHD 방송 서비스 최초 도입 이후 변화된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20.12월)
 - '시청자에 고품격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추진과제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관리 필요
- 지역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체의 현안 등을 소재로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21년)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전문성 강화 및 방송국 운영을 위한 개국 지원 필요
 - *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으로, 소규모 공동체의 현안과 행사, 소식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행점검 및 재허가) '18~'21년도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한 (재)허가 조건에 대해 철저한 이행 실적 등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조(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및 제99조(시정명령 등)

- '22년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9개사*) 재허가 심사 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엄정히 심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재허가조건 부가 추진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도로교통공단, 공동체라디오 7개사

- (지상파UHD 활성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0.12월)의 전국망 도입 일정에 따라 시·군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추진

- 지상파UHD 방송표준기술(ATSC 3.0)을 활용한 다채널 시범방송 광역권 확대 추진

- 시청자의 콘텐츠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UHD 방송국(16개) 대상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20%) 준수 여부 등을 점검

- (공동체라디오방송 개국 지원) '21년 선정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사업자(20개사)의 방송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국 지원

- 지역 방송의 다양성 구현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공동체 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원단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안 심사를 통한 제작예산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 사전 기본계획 의결	4월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접수	4~6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의결	6월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서 접수	6월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 접수	6월	
3/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9월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7~10월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8~11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불이행 방송사에 대한 후속조치	10월	
	지상파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 의결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 의결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과 민주적 여론수렴 환경조성

○ 이해관계집단

-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조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제고

- 지상파UHD, 공동체라디오 등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미디어 접근성 확대 및 시청권 복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100	97.2	99.5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사전기본계획 수립시 세부 계획으로 위임한 사항 중 실제 세부계획 반영 여부의 목표는 100%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률의 목표는 국정과제목표와 동일한 90% ○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목표 (100%×0.5) +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률(90%×0.5) 	[(재허가 세부 계획 반영 건수 /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 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실적자료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I-2-②)

□ 추진배경

- (종편·보도)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종편·보도 채널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20년 재승인 시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재승인 조건*'을 부가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준수,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진단, 방송심의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 유지 등

- (공익채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년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과 인정한 장애인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함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현황>

연도	공익성방송분야	해 당 채널
'21~'22	사회복지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한국직업방송
	과학문화진흥	사이언스TV, 아리랑TV
	교육지원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 MBCNET

- (사전동의) 「방송법」 제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허가재허가 시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방통위는 제도의 취지·목적, 동의의 내용과 성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부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편·보도)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재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차기 재승인 심사('23년~)를 위한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마련

- (공익채널) 공익채널 선정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24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선정 절차 개선 및 신청서류 요건 완화 등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2.31)

- (사전동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유료방송사업자 (SO·RO·위성)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방송의 공적책임 등) 이행실적 접수	1~4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3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4개사)	2~3월	
2/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사전기본계획 의결	5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2개사)	5~6월	
3/4분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2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2개사)	7~8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8월	
	공익채널 선정 심사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 접수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등	9~10월	
4/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11월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최종 선정(방통위 의결)	1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2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1개사)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종편·보도 및 공익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의 공적책임을 강화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종편·보도) '20년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제고
- (공익채널)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인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
- (사전동의) 사전동의 절차는 유료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사업 허가제에 절차적 엄밀성과 공익성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22년도 예산 2.2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100	100	100	96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률은 전년도 목표치(90%) 보다 상향하여 설정(92%)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및 심사위 운영, 최종 선정의 목표치는 100% ○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는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로 수치화하여 목표치(100%) 설정 ○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보도재승인 조건 이행률 (92%×0.5) + 공익채널 선정 (100%×0.3) + 사전동의 심사 (100%×0.2) 	건수/방송의 공적 책임 등 관련 종편 PP 재승인 조건 수 × 0.5) +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 운영 및 채널 선정 × 0.3) + (유료방송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건수/사전동의 요청건수 × 0.2)] × 100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법령에 따른 평가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
-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 유통 차단,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단말기 유통 시장 제도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

◇ 그간의 성과

- '통신분쟁상담센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분쟁조정 사례집', '사업자별 분쟁조정대응 현황' 공개로 국민체감도 상승
- 지능정보사회의 확대로 대두되는 신유형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원칙 수립
- 팩트체크 활성화 및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 고도화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
- 인터넷상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P2P)'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안심존앱 보급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플로팅광고의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 정보취약계층 대상 키오스크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통신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업자·유통점의 점검을 통해 불법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방지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중점 추진내용

-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제공
-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편익과 혜택 증진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비대면교육 전환 가속화 등의 환경에서 인터넷 역기능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과의존, 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보호
- 디지털성범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데이터 차단 강화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 지원 확대, 시의성 있는 검증 대상 발굴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 간에 상관성

- 신규 ICT 서비스 도입 등 통신·인터넷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등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①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 건수 ② 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팩트체크 결과물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②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 ③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 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1) 주요내용**□ 신규 ICT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 정책**

- 메타시대를 맞아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월)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한 실행지침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실효성 확보
-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결과 대국민 공개로 국민편익 증진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처하는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증진
-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
-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개선과 단말기유통법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유통 현황을 분석·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스팸감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신속·정확하게 불법스팸을 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스팸 전송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스팸 분석시스템 등의 고도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요구자의 위치정보를 긴급 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인터넷 이용행태를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 국민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스마트안심드림 앱에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한 음란 채팅, 음란 동영상 감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청소년 보호 S/W 기능 고도화
- 다양한 주체가 팩트체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관련 학회 등의 검증활동 지원 및 팩트체크 플랫폼 연계 추진

□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이용자가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 마련

- 플로팅광고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개선 노력 유도 및 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	-	신규	6	10	1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1년도 실적인 10건을 감안하여 '26년에 10건을 목표로 설정 * 20년 6건, 21년 10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상, 위치정보법 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비대면사회 가속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스템과 온라인 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필요 및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
 - 정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 발생 등
- (인터넷윤리 필요성 확대) 악성댓글, 혐오 등 사이버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적·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윤리 교육성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성장) 시장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반사이익 및 승자독식 현상이 점차 고착화

□ 갈등요인

- (플랫폼 이용자 보호이슈 대두) 플랫폼 쏠림현상 및 대형화에 따라 공정 경쟁 제한 및 이용자 이익침해 이슈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이해관계자의 유형이 다양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 이용자 피해 양상이 복잡하게 등장

- (인터넷 역기능 심화) 국민의 일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이버폭력·명예훼손·혐오표현 등의 역기능도 증가
 -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 이용 및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적 영향 및 이용자 이익침해 사례가 빈발
- (인터넷 위험도 증가) ICT 기술의 혁신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다크웹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 사이버언어폭력 등 불법행위 음지화를 유발
 - 코로나19 백신허위조작정보 등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허위정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적 혼란 우려
- (온라인 플랫폼 역기능) 소수 기업의 데이터 독점, 플랫폼의 필수설비화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 저해', '여론·정보 왜곡', '입점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 등을 유발

□ 갈등관리계획

-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성장, 지능정보 서비스 일상화 등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편익과 혜택 증진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디지털성범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데이터 차단 강화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조기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편익증진 등 선제적 정책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 메타버스 등 신규서비스 등장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대국민 접근의 편의성 제고와 통신서비스 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개선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
- 단말기유통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 유도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복잡·다양화에 대비한 이용자 교육 강화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8	8	8	8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 마련 등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내부자료,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법적 쟁점 등이 복잡하게 발생
-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산업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
 -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이용자의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로 불공정 행위 심화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이 전산업적으로 확대
-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즉시 시행(21.9.14) 및 복잡·다양해진 분쟁사건의 폭증 예상
- AI·IOT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또한 복합적으로 진화될 전망
- 이동통신 단말기 및 통신·인터넷 서비스가 생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이용자 불편 발생

□ 갈등요인

-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이용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로 불공정 행위 심화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
-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확증 편향, 필터 버블 등의 역기능 발생

-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폭증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
-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로 자리 잡아 가계 통신비 등이 이용자의 부담으로 대두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로운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Ⅱ-1-①)

□ 추진배경

- 인터넷 이용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이슈가 대두
-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폭증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
- 온라인 상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맞는 피해 구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 구축 필요성이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윤리원칙에 대한 실행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 마련
- 메타시대를 맞아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월)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한 실행지침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실효성 확보
-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술 수용도 및 권리의식 등에 대한 패널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 민관 공동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방송통신 조사업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조사관 교육 등 실시
-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통신분쟁조정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통신분쟁조정 결과 등 대국민 공개 확대
- '21년 사례집 발간·배포, 통신사별 분쟁 대응실적 평가·공개, 통신서비스 품질검증 시스템 도입, 통신분쟁(앱마켓)해결기준(안) 마련 등
- (온라인 피해구제 강화) 온라인 상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창구인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5월~)
- 정부·유관기관(과기부·방심위·소비자원 등), 전문가(학계·법률 등), 업계(기업·협회·단체 등)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운영
- 온라인 상 피해에 대해, 소관이 명확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인계 처리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는 직접 상담 및 자문 제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조정회의 운영	연중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및 배포	1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운영·고도화	1월~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월~	
2/4분기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4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5월	
	메타시대, 산·학·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개최	4월~	
	기술검증자문단 운영 및 통신서비스 품질검증시스템 도입	5월~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센터 개소(시범운영)	5월~	
3/4분기	'21년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대응 현황 발표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통신분쟁(앱마켓)해결기준(안) 마련	9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 완료	9월	
	조사관 전문 교육 실시	9월	
4/4분기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센터 개소(본격)	10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실행지침 발표	12월	
	온라인 피해사례집 제작 및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통신분쟁 당사자/전국민)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 및 유형별·지역별·사업자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제공, 통신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으로 국민체감도 상승

○ 이해관계자

- (통신·인터넷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 등은 플랫폼 사업자 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견 발생

□ 기대효과

-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등에 있어 이용자 주권을 확보하여 신규 ICT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해소 1번지로 안착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통신분쟁조정 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제도의 필요성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책 신뢰도 상승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해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로 이용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2 (54.36)	1.2 (20.68)
▪ 행정사무정보화(308)			1.2	1.2
- 방송통신조사시스템 운영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3.77 (85.23)	7.13 (85.05)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3.77	7.13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00)		기금	9.8 (153.95)	24.18 (186.01)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9.8	11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319)			-	13.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 건수(건)	-	신규 3		3	통신·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21년 이용자정책총괄과 제도개선 실적(3건)*과 동일하게 3건을 목표로 설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추천 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등 3건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정책 개선 관련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건)	155	572	1,170	995	목표치 : '21년 343건 → '22년 995건 '21년 대국민 홍보 및 5G 통화품질 이슈 등으로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여 목표치 343건보다 대폭 늘어난 1,170건을 처리함에 따라 '22년도 목표 건수를 '21년 실적치 대비 85% 수준인 995건*으로 조정하여 설정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건수	통신분쟁조정신청처리 건수(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E-mail 등)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Ⅱ-1-②)

□ 추진배경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22.1월~)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 및 대응('22.1월~)
-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자율활동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22.2월~)
- 집합건물 독점계약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자 협정체결('22.1월) 및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제도 시행('22.4월)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마련(~'22.3월)
- 별첨리뷰 등 온라인 이용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알권리 등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2.6월)
- 구내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 유도 추진('22.7월~)
-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위원회 시정조치(부당한경품 위약금 부과행위, 경품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22.4월, '22.12월)

- 원스톱 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SO사업자 등 참여 확대('22.7월)
- 유선결합시장의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실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22.8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1~12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관련 대응	1~12월	
	경품 제공 수준,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1~12월	
	인터넷플랫폼시장 모니터링	1~12월	
1/4분기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및 사업자 상호정산 협정체결	'22.1월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예방교육	'22.2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관련 하위법령 마련	~'22.3월	
2/4분기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및 사업자 상호정산 시행	'22.4월	
	부당한 경품위약금 부과행위 관련 시정명령 이행결과 점검	'22.4월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마련	'22.6월	
3/4분기	원스톱 전환서비스 확대 시행	'22.7월	
	집합건물 구내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 유도	'22.7월~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시정조치	'22.8월	
4/4분기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시정명령 이행결과 점검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혜택 수혜

※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IPTV 등) 및 앱 마켓 이용자 등(전국민)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앱 마켓사업자 및 앱 개발자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이익 제고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20.25 (85.23)	20.85 (85.05)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25	20.85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1.11	92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2.19	3.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84.8	86.0	87.0	87.5	3개년('19~'21년) 평균실적(85.9%) 및 '21년 이동평균값(86.5%)을 고려하여 '21년 실적 대비 0.5%p 상향	[(경품가이드 준수율+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 /2] 100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Ⅱ-1-③)

□ 추진배경

-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익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유통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 유도
 - 추가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관련 입법지원 ('22.6월)
 -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시 자율 재량 축소 등 부과방안 개선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22.10월)
- (시장 안정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 조사 및 개선 활동 실시
 -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항 상시 조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연중)
 -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현장 계도 강화(연중)
-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 대리점과 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자율구축 점검('22.9월)
 - 온라인 상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2.11월)
 - 이동통신 알뜰폰 시장 실태점검, 대·중소 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등 알뜰폰 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22.12월)

- (이용자 편의 증진)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혜택과 편의 확대
 -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주요사항 고지강화, 보상기준 표준화, 최소보상을 보장 등 제도개선('22.2월) 및 실태점검
 -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 개편을 통한 편의 정보 제공('22.7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2.2월	
	대리점과 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자율구축 방안 마련	'22.2월	
2/4분기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22.4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무 부과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반 구성	'22.4월	
	과징금 부과방안 개선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마련	'22.5월	
	추가지원금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 개정 관련 입법지원	'22.6월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 개편 방안 마련	'22.6월	
3/4분기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22.7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무 부과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	'22.8월	
	대리점과 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자율구축 점검	'22.9월	
4/4분기	과징금 부과방안 개선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22.10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무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2.11월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22.12월	
연중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제재 실시	'22년 연중	
	신규 단말기 출시 등 시장 과열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	'22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 통신비 경감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통신사업자)

-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20.25 (85.23)	20.85 (85.05)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25	20.85
	-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5.85	14.97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1.10	0.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	-	-	신규	80	$\{((1) \times 0.4) + ((2) \times 0.3) + ((3) \times 0.3)\}$ ※①(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 × 100 ② 정책제도개선 건수 2건 ③(상시조사 실시 건수 / 상시조사 대상 건수) × 100	①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②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위원회 안전, 보도자료 등 ③상시조사 대상 건수 및 실시 건수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Ⅱ-1-④)

□ 추진배경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피해 양상의 복잡·다양화에 대비한 이용자 교육 강화 필요
-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추진
- 모바일 앱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정보제공 및 협의체 운영,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계층별 교육 협력기관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여건에 따른 제약이 덜한 온라인 전용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최신 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반영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련 민·관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보호주간 행사 개최
 - 이용자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앱의 무선데이터 소모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유도

- (제도 개선)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 및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 등의 지속 추진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평가방안 마련
 - * 모빌리티, 중고거래 등 신규사업자 시범평가 검토
-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기간·부가통신 사업자별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점검 및 사실조사, 피해구제 기준 이행여부 점검
 -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설명회 실시
-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 앱마켓 관련 모니터링, 모바일 앱 결제 정보제공, 선택재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등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을 통한 건전한 모바일 앱 환경 조성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선택재앱 현황 파악을 통한 사업자 규제 및 세부 기준 근거 마련
 - 정보제공 홈페이지(앱결제 안심터) 및 블로그 운영, 이용자 불편·불만 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보호 제도개선안 마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사업자 설명회 개최	2월	
	불편광고(플로팅광고)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선정	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3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대상 앱 선정 및 측정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서면·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6~9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효과조사 실시	5월~11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실시	4월~10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홍보 실시	4~7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선택재 앱 모니터링 실시	4~10월	
	정보제공 홈페이지(앱결제 안심터) 및 블로그 홍보 이벤트 진행	6월	
3/4분기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7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보수교육 실시	8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집계 및 공개	9월~10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분석 및 공개	11월	
4/4분기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 개최	10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 사항 자문회의 개최	11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및 효과조사 결과 분석	12월	
연중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 제공	연중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연중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연중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노년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편의 증진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등 이용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및 권익 제고

-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빌리티, 중고거래 등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정비를 통한 이용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이용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19.59 (85.23)	16.68 (85.05)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19.59	16.68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8.97	16.06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0.62	0.62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5.77	5.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6.3	17.2	17.7	18.0	'21년도 실적(17.7%) 대비 0.3%p 상향한 18.0%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x 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5G 등 신규 ICT 분야에서 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개선 추진
-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전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실시,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불법스팸의 전송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법이 보다 지능화됨에 따라, 스팸의 발생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현장점검 및 기술적 대응 강화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공 DNA DB를 구축·확대하여 필터링 적용, 필터링 성능평가제도 고도화 등 추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청소년유해광고 점검 등 청소년보호 조치 강화 및 '스마트안심드림' 내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 서비스 도입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 지원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팩트체크 결과물(건)	-	19	134	156	1주당 3건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운영(52주×3건)	팩트체크 결과물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5G 등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화 요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 증가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신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폭력 및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 확산 등 사회문제 대두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출,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
- 최근 다양한 사회적 범죄가 온라인 스팸으로 시작되는 경향에 따라 스팸은 '성가신 마케팅'이라는 인식을 넘어,
 - 불법도박 유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갈취,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통장·계좌거래, 음란물 유통 등 '범죄의 창구'로 전략
-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 신기술 발달로 인한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사회문제 대두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를 위반하는 사례 발생
- 지나치게 엄격한 위치정보 규제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
- 인터넷윤리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연간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이슈의 적시 대응이 어려움
- 사업자의 불법스팸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불법도박 유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갈취,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통장·계좌거래, 음란물 유통 등 '범죄의 창구'로 악용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실시
-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및 개선
-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억제하고 통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팸 대응 노력 강화 필요
- 스팸을 통한 도박,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제 기관에 스팸데이터를 개방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규제 단속 강화,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등 개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Ⅱ-2-①)

□ 추진배경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도모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임시 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및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불법스팸 대응 》

-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유통 현황을 분석·공개(연 2회)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스팸 감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사업자 대상 스팸 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이용자 대상 스팸 피해 예방 교육 실시(연중)

- 도박중독·대출사기 등 국민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제 기관에 스팸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운영
- 신속·정확하게 불법스팸을 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스팸 전송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스팸 분석시스템 등의 고도화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인식 제고 위한 교육 지원
 - 규제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해설서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의 인식제고 및 실천 제고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 조치 교육 운영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
 - (서비스 개발 지원)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의 위치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비스 개발 환경(클라우드 인프라) 및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사업화 지원) 서비스 상용화·사업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중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해외 판로 지원) 해외 진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중국·베트남 등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네트워킹 확대 등 지원
 - (사후 관리) 이전 공모전 수상자 대상 컨설팅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후관리 및 성과 조사 실시

- (산업규모 파악) 국내·외 위치정보 관련 법·기술·서비스 동향 조사 및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실시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요구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측정 대상 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성공률 등) 등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 제고 유도

《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인터넷 이용행태를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민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확대 실시
 - ※ 연차별 인터넷윤리교육 목표 : ('20년) 18만명 → ('21년) 19만명 → ('22년) 20만명
- 초·중·고 교사 및 상담사, 유치원 교사, 지역아동센터 관리자 등 교육매개자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확대 운영, 지도서 배포 등 추진
-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대중 친화적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국민참여형 온라인 캠페인 강화 및 디지털 홍보물 제작·확산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대응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체험관 및 사이버윤리체험관을 운영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추진)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 논의
-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 연례 개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팸 데이터 개방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연중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3월~12월	
	'22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계획 수립·실시	2월~12월	
	'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발간 및 배포	1월~12월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1월~2월	
	위치정보사업자 등 실태점검	3월~12월	
2/4분기	본인확인기관 보완사항 점검	3월~12월	
	'22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6월	
	사업자 대상 상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6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추진	4월~6월	
	우수 비즈니스 모델 대상 성과 조사 추진	5월~11월	
	위치정보 공모전 수상자 대상 컨설팅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	5월~11월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5월~12월	
	온·오프라인 인터넷윤리 홍보	5월~12월	
	전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 예방 교육 추진	5월~11월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6월~10월	
	인터넷윤리교육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5월~12월	
3/4분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	3월~12월	
	임시조치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우수 비즈니스 모델 대상 사업화 지원 추진	7월~12월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9월	
4/4분기	교원 등 대상 인터넷윤리 예방 직무연수과정 운영	7월~11월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윤리 예방 교육	8월~10월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사업자 대상 하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11월	
4/4분기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12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운영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예비·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을 통한 우수 비즈니스모델에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관련 동향정보 제공
- (일반국민) 긴급 구조시 요구자 위치정보의 품질을 향상하여 긴급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 지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스팸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 예방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의 위치정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불법 스팸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통신사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대응 유도 및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 이용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시간 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불법대출 사기 등 2차 범죄 피해 방지

- 제도개선을 통해 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에 기여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시자와 권리침해주장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공익에 관한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상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및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7)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9) 	일반회계	35.85	35.2
			(85.23)	(85.05)
②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3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318)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기금	101.88	118.81
			(153.95)	(186.01)
			12.88	11.81
			13	11.7
			23	32.3
			53	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16	15	14	14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및 연평균 증감율,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14통으로 목표를 설정함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90.7	90.5	90	91	사업수혜자 대상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안내 및 정보 제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만족도×0.5)+(오프라인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87.5	88.2	88.7	89.1	○ '21년도 실적치(88.7)에서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증가폭(0.3점)을 고려하고 도전적으로 0.1점을 더해 0.4점 상향한 89.1점으로 목표치 산정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전문 조사업체 위탁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Ⅱ-2-②)

□ 추진배경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등)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강화*
 - * AI기반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활용 등
 -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 신고기능, 사전안내여부,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등
-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 상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
 - ※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인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 광고 등 점검 추진
 - '스마트안심드림' 내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한 음란 채팅, 음란 동영상 감지 기능 추가 등 디지털성범죄 노출방지 서비스 도입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 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참여 다양화 및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 지원 확대

* 전문가·일반시민의 협업을 통해 팩트체크 과정·결과가 공개되는 온라인 플랫폼

-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팩트체크 전문교육 시스템 마련,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 추진
- 팩트체크 확산을 위한 공모전(팩트체크톤)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 등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구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수합 및 내용 점검	1월 ~ 5월	
	성능평가용 데이터셋 개발지원 도구 구축 추진	2월 ~ 3월	
	성능평가용 동영상 및 특징정보 DB 추가 구축 추진	2월 ~ 3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추진	2월 ~ 3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자료 수정 및 보완	3월 ~ 6월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1분기)	3월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22년 1호 발간	3월	
2/4분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4월 ~ 6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4월 ~ 6월	
	성능평가용 데이터셋 개발지원 도구 구축	4월 ~ 8월	
	성능평가용 동영상 및 특징정보 DB 추가 구축	4월 ~ 8월	
	AI 기반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운영	4월 ~ 12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6월 ~ 12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 선별 및 지정안내	4월	
	국제 컨퍼런스(제2회 팩트체크 주간)행사 개최	4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실시	6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2분기)	6월	
	상반기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제 3회 팩트체크 톤)	6월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22년 2호 발간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6월	
3/4분기	팩트체크 대학강좌 개설	7월 ~ 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7월 ~ 9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7월 ~ 9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시스템 운영	7월 ~ 9월	
	불법음란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8월 ~ 9월	
	성능평가용 데이터셋 개발지원 도구 운영	9월 ~ 12월	
	구축된 평가용 특징정보 DB를 활용하여 성능평가 수행	9월 ~ 12월	
	'스마트안심드림' 내 디지털성범죄 노출방지 서비스 도입	7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3분기)	9월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9월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22년 3호 발간	9월		
4/4분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10월 ~ 12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10월 ~ 12월	
	불법음란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	10월 ~ 12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현장 점검 실시	11월 ~ 12월	
	하반기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제 4회 팩트체크 톤)	10월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22년 4호 발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4분기)	12월	
	제 2회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성과공유회 개최	12월	
	허위조작정보 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	12월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12월	
연중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1월 ~ 12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DNA 필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수행	1월 ~ 12월	
	팩트체크 전문 및 시민교육 상시운영	연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고도화 및 상시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기대효과

- 웹하드 사이트 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I-2-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기금	41.8 (153.95)	42.85 (186.01)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4.15	15.20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27.65	27.65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II-1-일반재정②)				
②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27.4 (711.77)	17.4 (709.1)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317)		27.4	1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130.6	114.2	103.2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기술적 조치 개선(삭제) 실적인 157,663건의 101%인 159,200건을 목표로 설정 ○ '21년도 실적인 68,391건의 101%인 69,100건을 불법음란정보 특징값 제공(방심위) 목표로 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 x0.5] x100 +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 x0.5]x100	실적보고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신규	95.9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92%로 설정하고,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1건) 달성률을 100%로 설정하여 최종 성과지표 목표치를 96%로 설정 	[수행건수/신청건수*0.5]*100 +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사업결과보고서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본 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함에 따라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등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가 필요
 - 동남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0년 방송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는 18.1조원으로 전년(17.7조원) 대비 1.9% 성장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4) 4.9% → ('16) 3.8% → ('18) 4.8% → ('20) 1.9%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



- '20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7,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방송사의 핵심 재원인 광고매출의 감소는 방송사의 경영 악화가 콘텐츠 재투자 여력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내 방송 산업의 성장 제약 및 혁신 역량 약화 우려
-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 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성장 인프라가 부족
- 다양한 방송통계·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청자 선호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방송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기반 조성 필요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방송사-외주 제작사 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필요
-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급속 변화하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 필요

◇ 그간의 성과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방송평가 규칙 개정(21.12월)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 관계자 교육 등 방송사 자체심의 지원, 우수 프로그램 시상, 고품격 방송언어 사용 자막고지 캠페인 등 실시
-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구현, 비실시간(VOD)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확대 및 미디어 환경변화와 코로나시대 전환으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경각심 제고('22.2월)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21.4월)을 통해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 및 협찬고지 규칙을 개정(‘21.9월)하여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함께,
 - 협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허용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0월) 및 입법지원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매년),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방식 개선 추진(‘21.11월)
-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 환경 변화, 규제 도입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 완화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방송 창작환경 조성(‘21.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자체제작 역량 강화 및 지역성 구현에 기여(‘21.6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OTT 활성화 협의체 운영(‘20)하고 및 해외진출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21)

◇ 중점 추진내용

-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현행화, 외주제작 인력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방송사업자 간 협의, 동물보호 준수 조항 마련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율적 상생 노력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7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미디어 환경 변화로 OTT를 통한 국민관심행사(올림픽·월드컵 등)의 온라인 생중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추진
-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TV 보급 대상 및 초·중·고교 대상 교육 방송물 제작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찬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등 협찬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재원 확충
- OTT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을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을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장애인의 방송이용 환경 개선,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방송 환경 조성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방송광고·편성·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 선순환 기반 조성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5	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방송 및 방송 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②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지역방송 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1) 주요내용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사업자·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보급 대상 및 초·중·고교 장애인 교육방송물 제작 지원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찬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등 협찬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재원 확충
- OTT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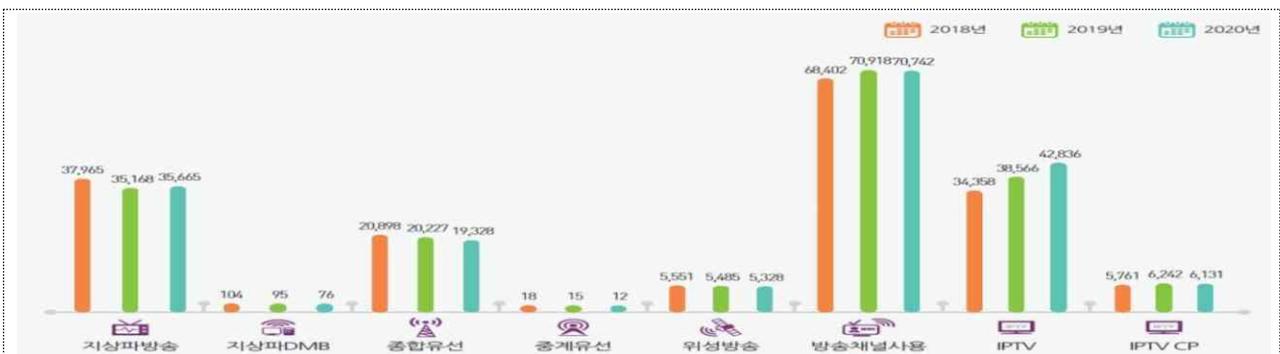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신규	16.5	17.3	17.7	18.0	19.1	'19~'21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의 연평균증가율(1.33%) 적용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OTT 서비스가 콘텐츠 소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에 따른 글로벌 OTT 자본 의존 심화, 제작 규모의 대형화 추세로 인한 제작사의 제작 기회 상실 등 콘텐츠 양극화 및 다양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 국내 OTT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및 공급 확대 및 해외 진출 여건 조성 등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 확대 지원 필요
- '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0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는 18.1조원으로 전년(17.7조원) 대비 1.9% 성장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4) 4.9% → ('16) 3.8% → ('18) 4.8% → ('20) 1.9%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



- '20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7,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방송사의 핵심 자원인 광고매출의 감소는 방송사의 경영 악화가 콘텐츠 재투자 여력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내 방송 산업의 성장 제약 및 혁신 역량 약화 우려
-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 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성장 인프라가 부족
 - 다양한 방송통계·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청자 선호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방송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기반 조성 필요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OTT를 통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온라인 생중계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 방송에만 적용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방송사-외주 제작사 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필요
 -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급속 변화하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 시청권 보장에 있어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 필요

□ 갈등요인

- 방송의 공공성·공공성 유지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수준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OTT사업자 등의 반발 우려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축소 등 장애인방송 관련 개선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 방송사업자들의 경영상황 등으로 편성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질적 수준 저하 우려,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및 협의 필요
 -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적합한 전문 수어통역사의 인력양성 필요
- SO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과점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조건 강요 및 부당 영업활동 등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
 - 실태점검, 조사 등을 통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과 위반 시 제도 개선, 시정명령 등 추진
-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 타 매체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권을 침해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17.12월)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방송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사업자·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유도
-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 산업부·중기부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랩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사업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의 방송평가 반영과 방송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지원 등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및 방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 마련
-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TV 보급 대상 및 장애인 교육방송물 제작 지원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 정책을 포함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신규	35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보급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체 누적보급 대수/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수)× 100	사업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OTT를 통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온라인 생중계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 방송에만 적용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방송사-외주 제작사 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필요
-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환경이 급속 변화하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시청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미디어를 편리하게 활용·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갈등요인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수준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방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방송사, OTT사업자 간 이견 등으로 갈등 예상
 -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개선방안 마련 추진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축소 등 장애인방송 관련 개선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 방송사업자들의 경영상황 등으로 편성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질적 수준 저하 우려, 지속적인 자원 확보 및 협의 필요
 -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적합한 전문 수어통역사의 인력양성 필요
- SO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과점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조건 강요 및 부당 영업활동 등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
 - 실태점검, 조사 등을 통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과 위반 시 제도 개선, 시정명령 등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Ⅲ-1-①)

□ 추진배경

-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이 시청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저해하고, 방송의 신뢰성을 낮추는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필요
- 국내 제작 우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미디어 환경 변화로 OTT를 통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온라인 생중계가 확대되고 있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에 OTT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방송의 품격 제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 고지 등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추진(5/10월)
 -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사례 교육 등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제작 지원 등을 통해 방송언어 순화 지원(연중)
- (우수 프로그램 시상)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등 사회·문화발전, 한류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을 통해 방송 제작인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22.5월)
- (보편적 시청권 확대) 올림픽 경기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 방지를 위한 순차편성 개선, OTT를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시청권 개선방안 및 입법안 마련(~22.12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추진 - 작품접수, 예본심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국민심사단 모집 및 운영	~22.3월	
2/4분기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	'22.5월	방심위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22.5월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22.6월(예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상반기)	상반기	방심위
3/4분기	방심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제작 지원	'22.10월	방심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협의	'22.7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22.10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법안 마련	'22.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하반기)	하반기	방심위
연중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시상(월별 5~6편)	매월	방심위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방송심의 실효성 확보(법정위원회 운영)	연중	방심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방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자율적인 판단 하에, 품격 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 (시청자) 막말·선정·폭력 등이 완화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시청,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OTT사업자) 방송제작 당사자 및 규제 대상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 심의 기관

□ 기대효과

-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언어 사용환경 개선 활동,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362.21	361.3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	방송통신	362.21	361.39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발전기금	3.10	3.10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301)		3.10	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점)	63.7	63.8	66.3	65.5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64.6)와 전 년도 실적치(66.3)를 감안하여 '22년 목표점수를 65.5점으로 설정 * 3년간 실적 평균치 :64.6 * '21년도 실적치 : 66.3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 3개 항목 : ① 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여도 ② 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 방송관련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III-1-②)

□ 추진배경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를 편리하여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미디어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정책 지원 및 발판 마련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주요업무계획 3-③)**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전반을 포용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 추진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全) 국민의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21.10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연 15,000대) 및 의무편성(필수·고시)사업자 대상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미디어 시청편의 제공
 - 실시간·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131개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연 30여편) 및 초·중·고교 장애인 교육방송물 콘텐츠(연 4,000여편) 제작·보급 등 추진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장애인방송 제작 인프라 기반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델 개발
-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변환 시스템 단계별* 개발 및 실수요자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등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 * ('19~'20)음성-자막 변환 → ('21~'22)자막-수어 변환 → ('23년~)시스템 고도화
- 미디어 소외계층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식 전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강화
 - ※ 장애인방송 유형별(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홍보영상 제작·송출, 베리어프리 공모전, 국제콘퍼런스 개최, 국민참여 이벤트 등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21.10월) 이후 사후조치를 위해 매년 사업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위한 연도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 수립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사업자 공고	3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3월	
2/4분기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	4월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자 선정	5월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대상자 접수	5~6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 수립	6월	
3/4분기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	7~8월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7~12월	
4/4분기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0~12월	
	유료방송 셋톱박스 호환성 기술 개발	12월	
	청각장애인 대상 음성-자막 시범서비스 운영	10~12월	
	장애인방송 유형별 홍보 영상 제작	12월	
	음성인식기반의 자막-수어 애니메이션 생성 시스템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소외계층)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게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의무편성 시행
- (장애인 유관단체) 시각·청각장애인 입장을 대변하고, 국내 장애인 방송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정책방향 마련에 기여

□ 기대효과

- 소외계층의 미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124.61	135.68
▪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303)	방송통신발전기금		15.5	19.0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109.11	116.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85.6	92.5	94.1	94.5	최근 3년간('18~'20년) 실적 증가 감안, '22년 목표 상향	(자막방송만족도×0.87)+(수어방송만족도×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III-1-③)

□ 추진배경

- SO의 점유율 하락과 IPTV 점유율 상승 등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 등 과열경쟁으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조성 필요
 -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홈쇼핑사업자-납품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방송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 방송채널 송출 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등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 시장 합리화
 - 방송시장(플랫폼-PP간, 홈쇼핑사-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미디어상생환경 조성
- (부처업무계획 ③-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
 - SO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과점 체제 재편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연중)
-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가입자 접수민원 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추진
 - ※ 방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따른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
- 인수·합병에 따른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실태점검 추진
- 지상파·중편PP의 건강정보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홈쇼핑에서 방송을 통한 관련 상품의 판매여부 등 지상파·중편-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
-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청자의 정보 활용도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2.6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2.6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22.6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2.6월	
3/4분기 4/4분기	이용자 권익보호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22.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지상파·중편PP-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	'22.9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4회)	분기별 1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4회)	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이용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 (방송사업자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를 통해 방송 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방송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IPTV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금지행위 규제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시장 동향 및 민원분석 등 방송시장 조사 관련 업무 지원

□ 기대효과

- 불공정행위 시정, 제도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발전기금	6.82	6.22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312)			6.82	6.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점)	신규	70.0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유형별* 불공정행위 개선도 평균 (*유료방송사, PP, 지상파 방송사,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 거래계약 상대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행 개선도, 사후 규제 정책 실효성, 정책홍보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0점에서 100점 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1) 주요 내용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찬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등 협찬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재원 확충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사업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OTT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2)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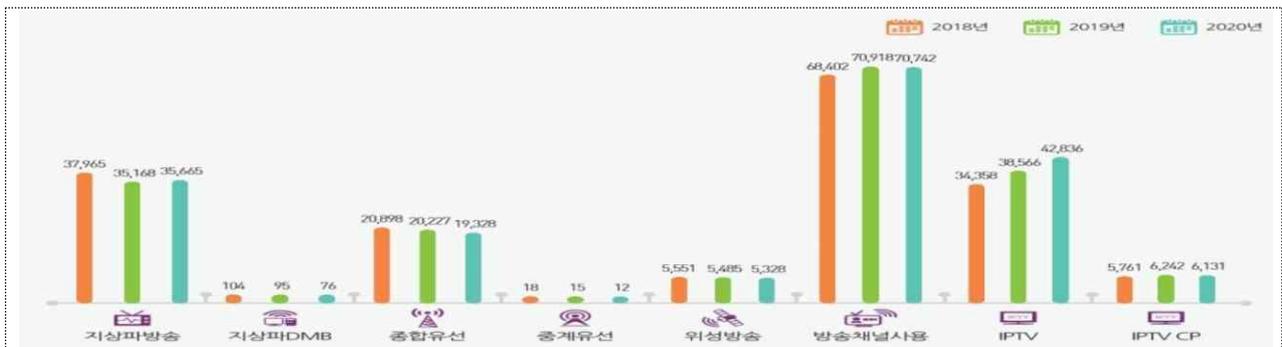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신규	83.7	각 구성요소별 '22년 목표치의 산술평균값을 목표로 책정 ① 외주제작정책만족도: 85 ② 방송광고시장(지역포함) 활성화 기여 달성도* : 82.5 * 방송광고시장 및 지역방송광고시장 기여 달성도를 각각 측정하여 산술평균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배)는 목표 기준 달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①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 ②방송 광고시장(지역포함) 활성화 기여 달성도*) / 2 * ②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그 값을 적용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하고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등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을 통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확인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 ‘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0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는 18.1조원으로 전년(17.7조원) 대비 1.9% 성장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4) 4.9% → (‘16) 3.8% → (‘18) 4.8% → (‘20) 1.9%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



- ‘20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7,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방송사의 핵심 재원인 광고매출의 감소는 방송사의 경영 악화가 콘텐츠 재투자 여력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내 방송 산업의 성장 제약 및 혁신 역량 약화 우려
-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 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성장 인프라가 부족
- 다양한 방송통계·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청자 선호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방송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기반 조성 필요

□ 갈등요인

-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 방송 분야 규제 개선으로 시청률 등 방송의 매체력 증가에 따른 타 매체 이용 및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권 침해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17.12월)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방송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사업자·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유도
-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산업부·중기부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문체부, 과기부에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방통위 차원의 OTT 플랫폼 지원 정책 추진에 어려움 있음

(4) 기타

□ 광고매체시장 환경 변화

- 국내 총광고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모바일·인터넷으로의 광고 시장 이동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특히 지상파 광고시장 급감

< 2020년 국내 매체별 총광고비 >

구분	매체	광고비(억)		성장률(%)	구성비(%)
		'19	'20	'20	'20
방송 (dmb 제외)	지상파	10,999	10,013	△9	7.3
	유료방송	18,992	17,159	△9.7	12.5
	방송계	29,991	27,172	△9.4	19.8
인쇄		23,730	19,200	△19	14
온라인·모바일		65,219	75,284	15.4	54.9
기타 (옥외/교통 등)		17,610	11,877	△32.6	8.7
총계		136,550	137,097	0.4	100.0

[출처 : (방송)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 이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 (개요) 7가지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이 비대칭적으로 규정

*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분류

- (광고총량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규제를 적용하되 총량 내에서는 자유로운 광고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중간광고 시간은 편성시간별 총량규제에 포함

- (중간광고) 중간광고는 허용하되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둠

유형	정의	텔레비전방송채널														
광고총량제	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제도	편성시간당 평균 17/100, 최대 20/100														
방송프로그램 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2~3부 등으로 나누어 연속편성하는 경우 시간, 횟수등 중간광고 통합기준 적용	<p>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허용횟수 다름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p>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 길이</th> <th>허용횟수</th> </tr> </thead> <tbody> <tr> <td>45-60분</td> <td>1회 이내</td> </tr> <tr> <td>60-90분</td> <td>2회 이내</td> </tr> <tr> <td>90-120분</td> <td>3회 이내</td> </tr> <tr> <td>120-150분</td> <td>4회 이내</td> </tr> <tr> <td>150-180분</td> <td>5회 이내</td> </tr> <tr> <td>180분-</td> <td>6회 이내</td> </tr> </tbody> </table> <p>※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1/32) 및 음성으로 고지</p>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프로그램 길이	허용횟수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150-180분	5회 이내															
180분-	6회 이내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오락·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분야에 허용)	<p>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p> <p>※ 프로그램 전에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하되 크기는 화면 1/16 내외</p>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오락과 교양분야에 허용)	<p>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p> <p>※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p>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III-2-①)

□ 추진배경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매체광고시장 역전, 제작비 급증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 악화
- 고품질 콘텐츠 지속 제작 재원확충을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1)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 >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과 협찬 제도 정비 및 유료방송 불균형 규제 정비, 지역 매체 활성화로 미디어 상생 촉진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1-①)** 플랫폼 혁신을 위한 최소규제 추진
 - (방송광고 규제 완화)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부처업무계획 ③-②)**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광고규제 개선 및 시청권 보호 병행
-
-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17.12월)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히 존재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사업자·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유도
 - 방송시장이 OTT·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나 방송 법상 편성규제는 지상파 등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되고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 규제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 필요

— < 국정기조와 연계성(2)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과 협찬 제도 정비 및 유료방송 불균형 규제 정비, 지역 매체 활성화로 미디어 상생 촉진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 (1-1) 플랫폼 혁신을 위한 최소규제 추진
 - (방송시장 규제 완화) 방송의 자율적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유율·요금·편성 등 규제 폐지·완화
 - (4-2-1)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 (불공정관행 개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과, 이행 독려, 합동 실태점검, 개정 추진
- (부처업무계획)
 - (1-3)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정기점검(1.7월), 가이드라인 재검토·개정(7월),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문체부 공동, 매년 1회)
 - (2-2)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편성규제 개선 법안 마련
- (상부 지시사항)
 - (대통령)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시정 및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17.8.30)
 - (국무총리)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17.8.1)

- 해외 OTT가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하여 외주제작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 받아,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이 해외 OTT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 OTT 성장을 견인해 온 지상파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 한류의 세계 재도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 SKT의 AI기술을 활용하여 "이영애 다시본다..'대장금 HD 화질로 컴백"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하고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등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필요

-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부처업무계획 ①-②) OTT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국내 OTT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포럼 개최(4분기) 및 해외 OTT시장 이용행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광고 · 협찬 제도개선 >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
 -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체계로 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영향평가 실시
 - 제작경비에 대한 의무적 협찬고지 등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지원 지속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표준계약서 사용률, 권리 배분 등 방송사-외주사간 외주 계약 실태 및 거래 관행 관련 문체부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지상파·종편PP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결과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 2회 이행점검 실시
-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현행화, 외주제작 인력의 고충을 위해 방송사업자 간 협의, 동물보호 준수 조항 등을 명문화 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7월)

-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을 마련
- 방송에만 적용되는 낡은 편성규제를 합리화하고 OTT서비스에 대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편성규제 도입을 검토하여 방송·OTT 간 규제격차 축소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가 국내·외 관련 사업자·제작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및 진출 시 현지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방송광고·협찬 제도개선 >			
1/4분기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 의견수렴	'22.1~3월	
2/4분기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 의견수렴	'22.4~6월	
3/4분기	중간광고 시청자영향평가 등 관련 연구 실시	'22.7~12월	
4/4분기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21.12월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1/4분기	OTT 편성규제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개최	'22.3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1년 하반기 프로그램 점검실시	'22.3월	
2/4분기	「방송·OTT 편성규제 혁신 연구반」 구성·운영	'22.5~11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반 구성·운영	'22.3~6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사업자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22.5~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22.6월	
3/4분기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22.7월	
	'21년 상하반기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2.9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설문 실시	'22.9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점검실시	'22.9월	
	방송·OTT 편성규제 혁신방안 초안 마련 및 중간보고	'22.9월	
4/4분기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22.11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	'22.12월	
	방송·OTT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	'22.12월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3/4분기	국제 OTT 시장 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 실시	'22.7~12월	
4/4분기	국제 OTT 포럼 개최	'22.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광고 · 협찬 제도개선 >

- (방송사 및 광고주)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광고 효율성을 확보하여 광고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에 기여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외주제작사)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과 이행점검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거래 시장 조성, 한류콘텐츠 성장 동력 기여
- (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합리화로 인해 규제 부담이 감소하고 편성 자율성이 확대되어 경쟁력이 강화됨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내 OTT 사업자 및 제작사) 국내 OTT 경쟁력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국내 OTT에 대한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유통 여건 조성
- (OTT 이용자) 국내 OTT 시장과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유통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OTT 콘텐츠 이용 가능

○ 이해관계자

- (시민단체) 방송광고·협찬 규제 완화로 인한 시청권 침해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방송 외 타 매체 사업자) 방송 분야 규제 개선으로 시청률 등 방송의 매체력 증가에 따른 타 매체 이용 및 광고시장 악영향 우려

□ 기대효과

- 방송광고·협찬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복지를 증진
- 방송·OTT를 포괄하는 편성규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 규제체계 도입에 적극 대응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하는 외주제작 환경 조성으로 인해 외주제작 시장이 활성화 되어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 제공
- OTT 사업 활성화에 애로·장애가 되는 현안 해소에 방통위가 창구적인 역할을 통해 국내 OTT 산업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3 (680.03)	3 (692.38)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3	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82.8	83.8	84.4	85	해당 정책을 통한 외주제작 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21년도 실적인 84.4점을 감안하여 '22년에 85점을 목표로 설정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조사 1차 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설문조사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III-2-②)

□ 추진배경

-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품의 우수성, 기술력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거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방송광고 외에 모바일·인터넷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추진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일자리 주요정책 59)**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홍보를 위한 광고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고용이 증가하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및 컨설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 총 47개사(TV 31개사, 라디오 16개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총 21개사에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지역 방송광고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177개사에 지역방송광고 제작·송출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방송광고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1월	
	1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월~3월	
	1차 지원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컨설팅 제공	3월~	
2/4분기	2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6월~7월	
3/4분기	2차 지원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컨설팅 제공	7월~	
4/4분기	효과평가 계획 수립 및 효과평가 실시	12월~	'23.2월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 확대 예상
- (방송사) 기존 광고주 이외에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 유입되어 광고매출 증가를 통한 재원확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이해관계자

- (미인증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지원 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29.9	37.23
		방송통신	(75.11)	(82.55)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발전기금	13.5	15.91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340)			16.4	21.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배)	신규 6.77		6.46	최근 2년간 실적 평균(6.68)에 '16~'20년 연평균 방송광고 증가율 -4.2%을 적용한 6.4에 1% 상향 가중치를 적용한 6.46을 목표치로 설정	방송광고집행액 / 방송광고 제작지원액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지역방송 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신규		65	최근 2년간 실적 평균(67.2)에 '16~'20년 연평균 방송광고 증가율 -4.2%을 적용한 64.4에 1% 상향 가중치를 적용한 65를 목표치로 설정	(매출향상 지원기업 비율×0.5)+(익년도 방송광고 집행예정 기업 비율×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22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국제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확대, 대언론 취재지원 강화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그간의 성과

- (정부혁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국민참여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낡은 업무관행 제거
-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보호
- (국제협력) 방송통신 정부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규제 정책 소개 및 국제적 현안 공유로 방송통신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로 해외 정부 및 관계자들과 교류 협력

- (규제개혁)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대표 분야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추진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 등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평가 등 추진
- 사회적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총무계획 작성 및 보안점검 내실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업무 관련 전문교육과정 제공
- 방송통신 주요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공동제작 협정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4	7	1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②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② 혁신과제 이행률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① 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①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②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③ 적극행정 활성화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②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정책홍보 활성화율 ②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②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③ 페이스북 채널 구독자 수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법령정비 과제들의 개선을 추진하여 입증책임제 지속 운영
- 직원의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제작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하고, 방송공동 제작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2) 성과지표 : 해당 없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국정과제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신종 감염병 출현, 사회·자연재해, 국제 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
- 한류 방송콘텐츠가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통신 분야 교류 협력 기반 확대 등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갈등요인

- 기관 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
- 사회적 재난 발생이 돌발적이며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범위 및 대상 확정의 어려움과 안보 인식 저하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간 규제협력 및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갈등관리계획

- 업무 DB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에 노력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 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 구축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방송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기관장,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구성원들로부터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기 주도적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다양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정책판단 기준이 되는 국정철학 등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 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관리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평가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하고,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 적극 수행 및 정부혁신 콘서트 등 기관내·외 소통 강화로 정책 수행성과 창출
- 업무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위라벨 우수기업 현장학습·벤치마킹으로 선진적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

□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법령정비 과제들의 개선을 추진하여 입증책임제 지속 운영
-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적 차원의 효율성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차원의 업무성과 극대화 실현 노력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	신규	100%	100%	2022년 주요업무 이행실적 측정	(이행과제 건수/세부과제 건수)×100	분기별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	-	50%	70%	규제 신설·강화 시 피규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규제 심사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작년 목표치(65%)보다 5% 상향한 적극적 목표 설정	심사절차 준수 건수/총 심사건수×100	규제정보화시스템,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문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국정과제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대응체계 운영 필요

□ 갈등요인

- 기관 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
- 사회적 재난 발생이 돌발적이며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범위 및 대상 확정의 어려움과 안보 인식 저하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갈등관리계획

- 업무 DB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 노력
-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 구축
- 장시간 근무 관행, 상사·동료 눈치 보기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사용이나 정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 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 항목이나 직무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과제, 공직가치 등 교육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체계적 관리·독려가 지속적으로 요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IV-1-①)

□ 추진배경

- 제5기 방통위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핵심역량 집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점검 및 평가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국정과제 핵심목표를 최종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낡은 업무관행 제거
- 노년층·장애인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TV보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포용적 정책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추진,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확대, 혁신문화 지속 조성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2.2월	
2/4분기	2022년 상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22. 상반기	
3/4분기	2022년 하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22. 하반기	
4/4분기	2022년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22.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취약 계층
 - 방송통신 업계 각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방송통신산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이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조정이 어려움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	100	100	100	100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 국정과제는 방통위 주요 업무 추진 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목표를 100%로 설정	(점검횟수 / 4) × 100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내부자료 및 국정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혁신과제 이행률(%)	100	100	100	100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측정 - 정부혁신과제는 방통위 조직혁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목표를 100%로 설정	(이행과제 수/ 전체 과제 수) × 100	정부혁신평가 결과보고서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추진배경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총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비상 시 동원가능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수행
- 신종 전염병 출현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대응체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주요 방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 향상 및 직원 안전의식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총무계획 작성·시행,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회의 지원 등 기술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2~3월	
	2022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총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5~11월	
	2022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5~6월	
3/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9~10월	
	2022년도 을지태극훈련 실시	9~11월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9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0~11월	
	2022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1~12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1~12월	
수시	방통위 홈페이지 내 백신 가짜뉴스 신고코너 운영	연중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중대본 영상회의 기술지원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및 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사이버 보안대비) 정부·공공기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방송사업자(재난주관방송사 및 전국 방송사업자 등)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기대효과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총무계획 수립, 을지태극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방송통신 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2.68 (41.71)	12.68 (54.36)	
	▪ 행정사무 정보화(308)	12.68	12.68	
②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8.26 (41.71)	11.36 (54.36)	
	▪ 방송재난관리(307)	8.26	11.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79.6	80.7	81.2	82.2	'21년 목표치대비 1.0% 향상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본인확인기관 : 6개 - 위치정보사업자 : 3개	AL(%)=(T/5)×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2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 :44개 -보안점검 목표 : 14개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점검 결과보고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Ⅳ-1-③)

□ 추진배경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방송통신 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법령정비 과제들의 개선을 추진하여 입증책임제 지속 운영
-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반기)	'22.2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상반기)	'22.3월	
2/4분기	20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22.5월	
3/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반기)	'22.8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반기)	'22.9월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	'22.9월	
4/4분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국민공모 실시	'22.11월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제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혁신과제 추진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기존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100	100	100	100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 선정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추진을 위해 '21년도 이행 목표치 100%를 유지하여 100%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이행률(%)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 × 100 * 이행여부 판단기준: -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 내용을 보고 이행 여부 판단	보도자료 및 개정안 내부자료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IV-1-④)

□ 추진배경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국정가치 실천 문화 조성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기능·업무연속성 유지가 요구되는 가운데 구성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서장급 이상 기성세대가 솔선하는 근무환경 조성 필요
- 적극행정 본격 추진 4년차로, 적극행정의 일상화가 필요한 시점으로써 '국민이 체험하는 확실한 성과창출'을 위해 성과창출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행정으로 뒷받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
 - 사회적 가치 등의 국정과제 교육과 민생체험·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 공직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공직자 상 구현
 - 방송통신 관련 직무 교육과 기관 주도 및 개인별 외국어 교육을 추진·지원하여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
 -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 및 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형태 정착 필요

- 구성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급 이상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는 근무문화(연가 및 유연근무사용 등)필요
- '21년에는 구성원 모두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근무여건 분위기를 조성하여 '20년 대비 연가 사용이 증가

※ 중앙행정기관(48개) 1인당 평균 연가사용 : 20년 15일 → 21년 15.8일
 - 위원회 전체 1인당 평균 연가사용 : 20년 14.1일(36위) →21년 15.9일(22위)

- '22년 또한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근무시간 자율설계,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휴가 등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 본부 각부서·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 내외부 공모를 통한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실시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및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홍보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2월	
	'22년 신규 직원 교육	2월	
	공무원 복무제도 교육	3월	
	'22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독서통신 교육	4~5월	
	'22년도 근무혁신방안 종합계획 수립	4~5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상반기)	5월	
	방통위 적극행정 자체교육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분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	2분기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하반기)	9월	
4/4분기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홍보	12월	
	복무제도 만족도 조사	12월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4분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4분기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 점검	연중	
매 월	유연근무 실적 집계 및 분석	연중	
수 시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조직) 국정가치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추진함으로써 조직 생산성과 직원역량을 제고하여 조직효율 향상
- (직원) 국정가치, 전문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자기개발을 실현하며, 일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문화를 확산을 통해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
- (국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 증진

○ 이해관계집단

- (교육기관) 국정가치 및 직무분야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교육 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부서장·동료) 유연근무활용, 연가사용 등이 증가하더라도 조직 생산성 및

업무능률이 유지·향상될 수 있음을 구성원이 인지하고 노력 필요

- (국민평가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 평가점수를 반영(적극행정위원회(50%)+국민평가단(30%)+직원평가(20%))

□ 기대효과

-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한 방송·통신분야 공직인재를 양성하여 국정 목표·과제 실행력을 제고하여 국민 신뢰 향상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내 감염을 최소화 하면서 조직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 관리자급 공무원의 근무혁신 솔선수범으로 위원회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가 집중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조성
-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부처주도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 하여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유도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15.6	17.7	19.9	20.1	전년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 목표치(18시간) 대비 11.6% 증가한 20.1시간을 목표치로 설정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100%	100%	'21년 위원회 4급이상 유연근무 실시목표(55%)와 평균연가사용목표를(13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60%, 13.5일)설정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60% * 50% + (4급이상 연가 사용일수의 합 / 4급이상 직원 수) / 13.5일 * 50%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적극행정 활성화(%)			100%	100%	과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사례 선발 실적(21년 8건)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건을 목표로 설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건수/10건*100%	적극행정위원회 실적 자료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방통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국민불편 해소 정책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오보·왜곡보도 등은 신속 대처하여 올바른 정책정보 제공

□ 온라인 소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활용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등
 - 해외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분석 등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3	2	2	2	코로나19 상황이 불투명하고 업무추진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신규	100	100	100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 하는 비율로, 정책의 적극적 확산을 위해 100% 목표치 설정	온라인콘텐츠 게재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방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및 보도자료 배포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이 점차 복잡해져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교류 활동이 위축되고,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 방송통신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 체계 강화 필요함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큼

□ 갈등요인

- 규제중심 업무로 일반국민의 주목도가 높지 않고, 내용이 어려워 정책 확산이 어려운 한계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간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임

□ 갈등관리계획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보도자료·홍보콘텐츠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회의 참여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정부간 정책 협력 강화
-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IV-2-①)

□ 추진배경

- 방통위의 정책목표·추진과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이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국민·대언론 소통 활성화) 보도자료 배포, 정책브리핑 등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 취재지원 및 국민소통 강화

- (오보 대응 체계화) 허위·왜곡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방향을 정해 반박자료 배포·언론사 설명·언론중재 등 적극 조치
- (기관장 홍보활동 강화) 현장소통, 정책관계자 간담회, 방송출연, 기고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현장·비대면 소통 강화
- (직원 소통역량 강화) 보도자료 작성 요령,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 등 직원 대상 홍보교육 및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안내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1월	
	사업별 홍보캘린더 마련	3월	
2/4분기	기관장 언론홍보 추진	6월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6월	
3/4분기	주요 방송통신 정책 홍보	9월	
4/4분기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12월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연중	보도자료 배포(영문 보도자료 포함)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주간 홍보계획 관리		
	설명·반박자료 배포 등 오보 대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언론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방송통신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관련 보도·설명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사의 취재활동 지원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시민단체 등) 방통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자, 시민단체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 발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

□ 기대효과

-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전략 마련 및 적극 소통을 통해 전 국민이 방송통신 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 이슈사안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언론사 설명 등 즉각 대응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정책홍보 활성화율(%)	신규 100	100	100	보도자료 배포 및 오보대응은 사업부서 협조가 필요함에도 원활한 정책소통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활성화 및 철저한 오보대응을 위해 100% 목표치를 설정	(보도자료 배포건수/최근 3년 평균 보도자료 배포 건수(273건) ×60%+ (오보대응건수 /오보모니터링 건수)×40%	방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 코너) 및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74.2	76.25	77.15	78.7	최근 3년 만족도 결과의 연평균 증가율(2%)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 증가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방통위 온라인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IV-2-②)

□ 추진배경

-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SNS 채널 확대) SNS 채널을 신설하여 위원회 정책 메시지를 확산하고 다양한 세대와 보다 쉽고 친근하게 소통
 - 2030세대 대상 소통 강화를 위한 특화형 콘텐츠 개발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캠페인 추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여 실용적 소통 확대
- (사회적 이슈 대응) 사회적 이슈 대응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반기	2022년도 홍보 계획 수립	1월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지원 대행사 선정	2월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활성화	수시	
	온라인 활성화 이벤트 실시	수시	
	상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추진	3월~6월	
	국민참여 방송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3월~6월	
하반기	온라인 활성화 이벤트 실시	수시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활성화	수시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9월	
	부처협업 캠페인 진행	9월~11월	
	하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추진	9월~12월	
	국민참여 방송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9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통신 관련 정보·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위원회 정책 홍보 및 생활 밀착형 방송통신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인플루언서)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은 위원회 정책에 관심이 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필요

□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동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신규 123건	180건	132건	일반국민이 방송통신 정책을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 하는것으로 국민 참여 콘텐츠로써 의미 있는 지표 - 코로나 19로 취재·제작 한계가 있음에도 전년도 목표 대비 10% 증가 [월 11건 × 12개월] = 132건	방통위 정책기반 제작 콘텐츠 및 국민 의견 제안 등 기반 콘텐츠 제작 또는 게재 건수	방통위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및 SNS 게재 현황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신규 21,228명	신규 21,228명	24,412명	대표적인 국민소통평가 동영상 SNS 채널인 유튜브 활성화를 평가 지표로 활용 -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21년(21,228명)대비 구독자 15%의 증가한 적극적 목표 설정	'22년 12월 말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숫자	유튜브 채널 내 구독자 수 현황
페이스북 채널 구독자 수	신규 33,296명	신규 33,296명	36,636명	국민소통평가 주요 채널인 페이스북 활성화 정도를 평가 지표로 설정 - 성숙기에 있는 시장임에도 '20년(33,296명) 대비 10% 증가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22년 12월 말일 기준 페이스북 구독자 숫자	페이스북 페이지 내 구독자 수 현황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③)

□ 추진배경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국가간 협력 기반 강화)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주요 정책 현황 공유 및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국제기구 협력 강화) AIBD 등 방송통신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해외 방송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채널 활성화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제고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TV, 라디오를 통한 북한의 문화, 역사 등 비정치 분야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국가(태국·터키·캐나다 등)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방송콘텐츠 강국으로서 방송교류를 통한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시장·규제·공동제작 현황 등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사업자의 공동제작 관련 해외진출을 지원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체결의 실효성 제고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촉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1월~	
	2021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추진 계획 마련	3월	
2/4분기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 동향 파악	4~6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조사대상국 선정	4월~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개시	5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선정	6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공모	5~6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6~7월	
3/4분기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방송통신 정책 교류·협력 추진	7~9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 중간 점검	8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사업 중간 점검	8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중간 점검	8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설문조사 실시	8월~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현황 중간 점검	7~8월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7~8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9~10월	
4/4분기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방송통신 정책 교류·협력 추진	10~12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1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방영	12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12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보고서 결과보고	12월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현황 최종 점검	12월	
연중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연4회 개최	연중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등

○ 이해관계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 기관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 협력 기반 강화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

- 방송관련 국제기구와 정부간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프로그램 발굴(시상) 등 국제 방송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 확산 실행력 강화
- 방송 공동제작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 제작협정 협상 대응 및 방송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에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27.70	26.06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3.05	2.74
- 방송통신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0.7	1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		3	3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발전기금		1	0.9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4	3.4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1.2	1.7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5.35	4.82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5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점)	신규	75	73	73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개별 만족도 합계의 3개년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 방송통신 인프라강화 만족도와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만족도:19년(72.85점), 20년(72.28점), 21년(75.4점)	[(방송통신 인프라강화만족도)x0.5]+[(방송공동제작협력 강화 만족도)x0.5]	방송통신 사업자, 제작자, 방송사 등 수혜기관 설문조사 실시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공통)(점)	82	90.7	84.8	80	최근 3년('19년 82점, '20년 90.7점, '21년 84.8점)의 실적 평균값인 85.8점에서 남북간 경색국면 지속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조정 계획에 따라 '22년 목표치를 80점으로 하향 설정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방송통신 업계 및 학계 등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 수혜기관 설문조사 결과

IV

환류 등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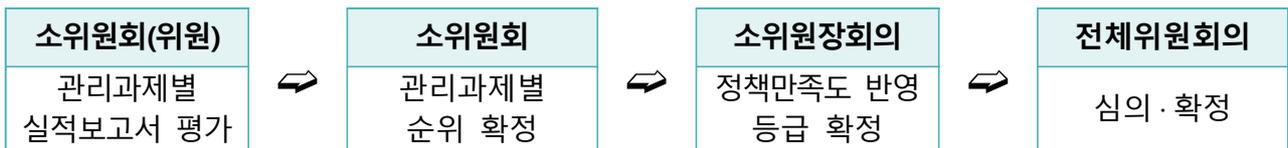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

< 자체평가 절차 >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원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평가지원총괄팀(의안정책관리팀)은 자체평가 주요계획을 수립·시행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작성방향, 평가 기준·방법·일정 등 세부 추진방향 수립
 - 평가분야별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전체·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 총괄
- 정부업무평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평가자와 피 평가부서 간 소통창구 역할
- 평가지원팀(각 국 총괄)은 각 소위별 정책소통 및 평가 실무 지원
 - 과제 담당자로부터 평가자료 수합·정리, 자료 제출 등 소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 평가관련 제도 개선, 정책설명회 개최 수요제기 등 국별 의견 제출
 - 반기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점검 시 국별 추진실적 1차 확인·점검

□ 평가(점검)의 시행

- 상반기 세부과제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인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각 소관별 추진실적 및 증빙 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고 Plan-Do-Check-Action 사이클 확인·점검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의 종합적 심층진단 병행

<이행상황 관리 점검 및 평가 체계>



□ 주요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22년 1분기	○ '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3월
'22년 2분기	○ '22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 직원 설명회 개최	5월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부서성과평과에 반영)	5월
'22년 3분기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정(필요시)	6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이행계획 점검 및 국조실 제출	7월
'22년 4분기	○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현장 방문 및 워크숍 개최(필요시)	10월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부서성과평과에 반영)	10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정책만족도 조사	11월
	○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11월
	○ '22년 자체평가 실시	12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환류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 보완사항은 '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자체평가를 부서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연봉·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유도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에 전파·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 환류 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결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추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전보·파견 등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 파견 시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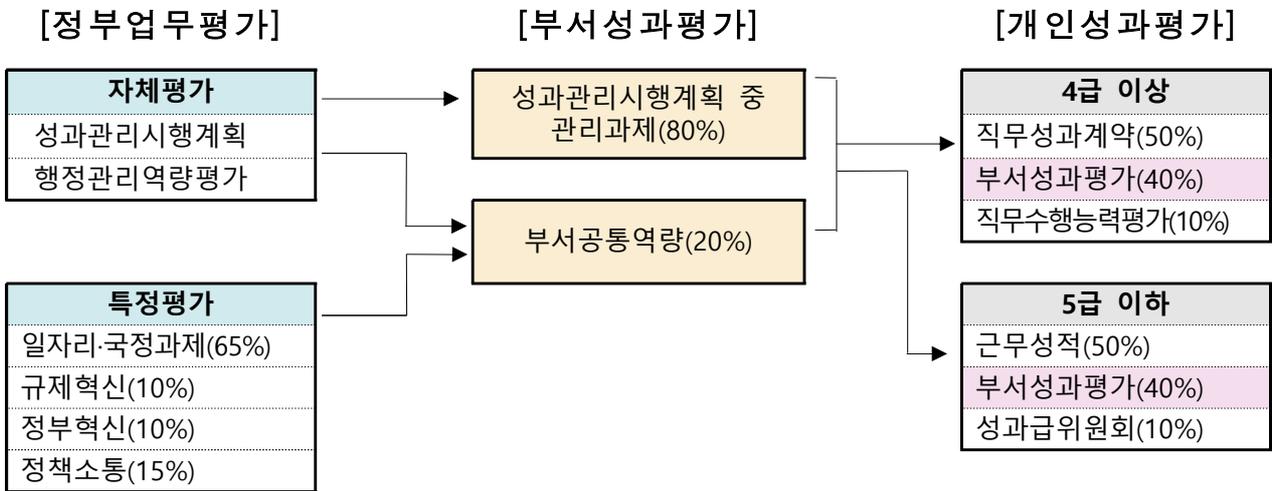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체결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 지급등급 결정
-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 직무성과계약(50%), 부서성과평가(40%)* , 직무수행능력평가(10%) * 자체평가(80%)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5급	○ 근무실적평가(60%), 부서성과평가(40%)* ,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10%) * 자체평가(80%)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성과상여금	6급 이하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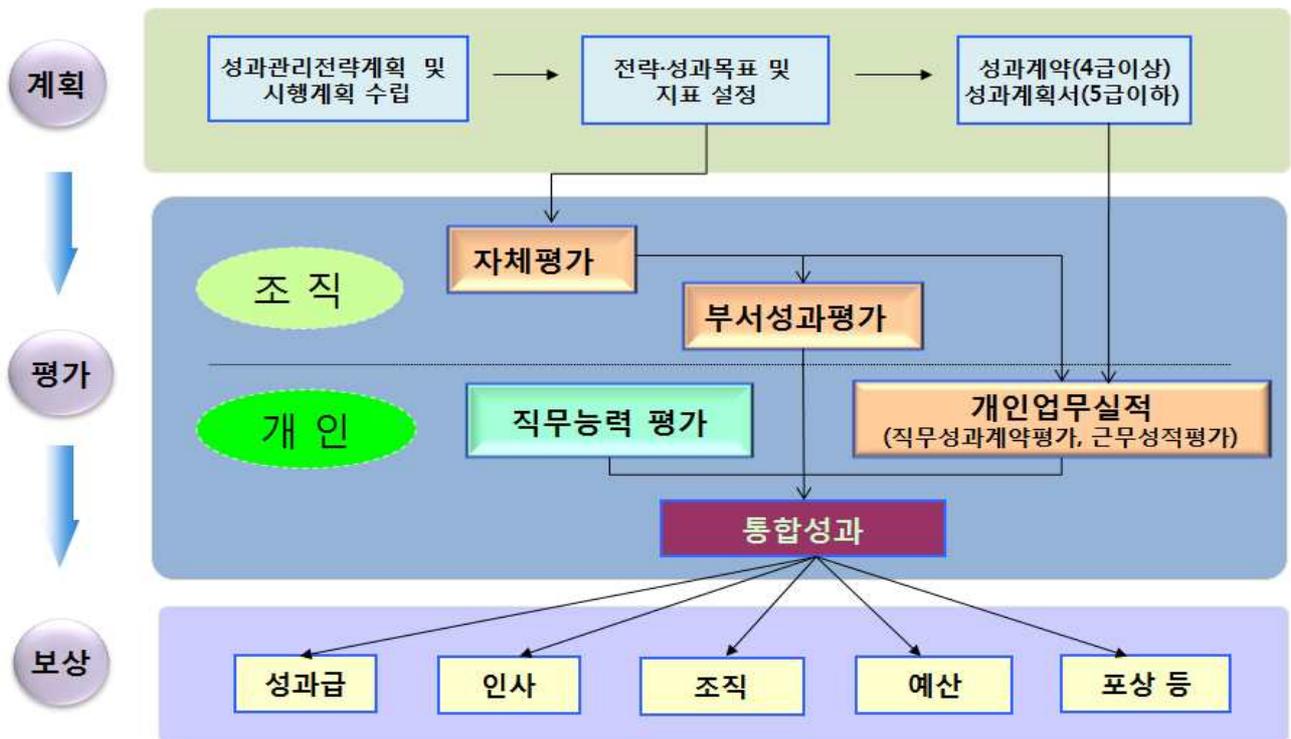
<성과관리 체계>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

- '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3. 변화관리 계획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근무시간 자율설계

-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조직 생산성 제고
 - 자기개발, 자녀 돌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방법 안내
- 유연근무활용이 증가하더라도 조직 전체 생산성이 유지·향상될 수 있음을 전체 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조직문화 개선 동력으로 사용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13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집중근무시간 운영

- 위원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업무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하고, 회의, 대면결재 대기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바로톡을 통해 업무시간 내에서 단체대화 활용
 - 근무혁신방안 추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관한 상급자의 우려 및 만성적 초과근무를 지속해온 조직원의 관성을 축소

3-2. 조직문화 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확산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기능 및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위한 가외성 확보 수단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이 필수적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언택트 근무형태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 대비하여 유연근무제가 조직문화에 정착되도록 지속적 노력
 -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출퇴근 시간 절감 등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실질적 변화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활용에 대한 구성원 인식전환 및 간부직 직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립·실천

□ 연가사용계획 수립

- 일과 삶의 균형이 전체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직이 학습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
 - '22년 권장연가 일수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부서장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 조정
 - 간부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과·팀장 이상 부서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실시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수, 금)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충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
 - '가족 사랑의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 정시퇴근 유도를 위해 구내방송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공지하고 부서별로 순회하여 정시 퇴근 독려

□ 권장연가제 및 연가저축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 최소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 중 일부를 저축
 - 권장연가일수 대비 미사용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 작업시 1~2일을 저축연가로 전환

3-3. 직원교육 강화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철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 지정학습 이수를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 및 전화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직장 내 일과 학습을 연계한 비정형 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인정기준을 정비하여 학습 효율성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시 개인의 부족 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수행 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성과지표 관리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결과('16년)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정책토론·공청회·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 유형별 다양한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고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수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총체적인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는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 개발 노력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대상별 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 간 협업 노력도' 점수를 15점으로 높게 부여
 - 정책추진단계별(수립-집행-환류)로 이해관계자, 정책고객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 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정부 운영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활동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회 확보, 참여수준 심화 등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22년도 관리대상 과제 및 의견수렴 방법 >
○ 대상과제 : '2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24개
○ 의견수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민, 정책고객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정책토론·이슈토론·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
○ 전담부서 : 과제담당부서
○ 관리체계 : 과제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반영도를 자체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관리

□ 방송통신정책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토론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 절차 마련
-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환류 전 단계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재설계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 전담부서(혁신기획담당관)를 지정하여 과제 발굴 및 관리

□ 정책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외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온라인, 모바일)하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에 대해 의견제시,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안전관리 담당자(행정법무담당관 제안담당)를 지정하여 등록안전, 안전 검토,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별로 국민제안 안전 발굴 및 참여 실적을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국민제안 의견수렴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대화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투표·설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투표 및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공모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
 -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22명)
 -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3	0 (0%)	0 (0%)	2 (66.6%)	1 (33.3%)	3 (100%)
성과목표	8	10	0 (0%)	0 (0%)	8 (80%)	2 (20%)	9 (90%)
관리과제	24	41	0 (0%)	0 (0%)	24 (59%)	17 (41%)	32 (78%)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23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법상, 위치정보법상 제재 건수 집계	10	정량	결과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조원)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19.1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 0.5 ※ 5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92.6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 × 0.5 ※ '22년 목표 : 60개	100	정량	산출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재허가재승인 조건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 PP 재승인 조건 수) × 0.5]	92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I-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8	정량	산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팩트체크 결과물(건)	팩트체크 결과물 건수	156	정량	결과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전체 시각·청각장애인 TV보급 누적보급률(%)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 수) × 100	35	정량	산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방송산업 기반 구축률(점)	(①외주제작 정책만족도 + ②방송광고시장(지역포함) 활성화 기여 달성도) / 2	76.5	정성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이행과제 건수/세부과제 건수)×100	100	정량	산출	
	②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심사절차 준수 건수 / 총 심사건수×100	70%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2	정량	산출	
	②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 콘텐츠 게재건수/보도자료 배포건수	100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서비스 관련법 정비 추진율(0.7) 연구반 운영X0.2+대외 의견수렴X0.2+법안 마련 X0.3 ②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율(0.3)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실무논의X0.1+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X0.2	94	정량	산출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97.3	정량	산출	
		② 미디어교육 이수율 (%)	(미디어교육 수료인원 / 미디어교육 수강인원)x100	94	정량	산출	
		③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2.8	정량	결과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 만족도(점)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87.4	정성	결과	
		②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수)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184	정량	산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점)	① + ② ①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목표 100명) × 0.5 ② 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목표 75점) × 0.5	88.5	정성	결과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21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 /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104개소)]x100	92	정량	산출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95	정량	산출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종편·보도PP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관련 재승인 조건 수 × 0.5) + (공익채널 선정 × 0.3 +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 × 0.2) × 100]	96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①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 건수(건)	정책 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3	정량	산출	
		②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건)	통신분쟁 조정 처리 건수	995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가이드 준수율(%)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 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2] * 100	87.5	정량	산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점)	{(①X0.4)+(②X0.3)+(③X0.3)} ※①(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100 ② 정책제도개선 건수 2건 ③(상시조사 실시 건수/ 상 시조사 대상 건수) X 100	80	정량	산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x 100	18.0	정량	산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4	정량	산출		
	②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만족도 ×0.5)+(오프라인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91	정성	결과		
	③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89.1	정성	결과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 율(%)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 x0.5] x100 +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 x0.5]x100	100	정량	결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기술 성능평 가 수행률(%)	[수행건수/신청건수*0. 5]*100 +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96	정량	산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65.5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자막방송만족도×0.87)+ (수어방송만족도×0.04)+ (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94.5	정성	결과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점)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1.0	정성	결과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 개선 만족도(점)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85	정성	결과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배)	방송광고집행액/방송광고제작지원액	6.46	정량	결과	
		② 지역방송 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매출향상 지원기업 비율×0.5)+(익년도 방송광고 집행예정 기업 비율×0.5)	65	정량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 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이행상황 점검률(%)	{(점검횟수/4)×80%} + {('21년 국정과제 성과지표 ①+②+③+④+⑤+⑥이행율*)×20%} ※ ①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재허가(승인)조건 이행률 ②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허가 조건 이행률 ③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이행률 ④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⑤ 불법정보 차단 건수 ⑥ 인터넷 윤리교육 참여자수	100	정량	산출	
	② 혁신과제 이행률(%)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100	100	정량	산출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 수준율 T: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82.2	정량	산출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이행률(%) = (기존규제 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100	100	정량	산출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조성	①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20.1	정량	산출	
		②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5% * 50% + (4급 이상 연가사용일수의 합 / 4급이상 직원 수) / 13일 * 50%	100	정량	산출	
		③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 공무원 선발 건수/8건*100%	100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 소통 강화	① 정책홍보 활성화율	(보도자료 배포건수/최근 3년 평균 보도자료 배포 건수(273건) × 60% + (오보 대응건수/오보모니터링 건수) × 40%	100%	정량	산출	
	② 대국민·대인론 정책소통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대 국민 만족도 50%+대 인론 만족도 50%)	78.7점	정성	결과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방통위 정책기자단 제작 콘텐츠 및 국민 의견 제안 등 기반 콘텐츠 제작 또는 게재 건수	132건	정량	산출	
	②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2년 12월 말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숫자	24,412명	정량	결과	
	③ 페이스북 채널 구독자수	'22년 12월 말일 기준 페이스북 구독자 숫자	36,636명	정량	결과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 협력 만족도(점)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만족도)×0.5]+[(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0.5]	73	정성	결과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8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업무 2-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업무 2-②)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방송광고 제작지원 및 미디어리터러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61-2)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업무 4-③) 1·2·3차 전산업으로 5G, AI융합 확산 (한국판 뉴딜 1-1-2)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한국판 뉴딜 3-2-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방송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국정 70-2)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61-1) 미디어 공공성 강화(업무 1-②)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업무1-③)
2. 재허가제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미디어 공공성 강화(업무 1-②) 미디어산업 활력제고(업무 3-①)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업무 1-①) 미디어 공공성 강화(업무 1-②)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방송통신 성장 지원(업무 3-3)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업무 4-1, 4-4)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국정 31-6)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업무 4-1)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방송통신 성장 지원(업무 3-3)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업무 4-1)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국정 70-5)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61-1)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업무 4-4)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개선 (국정 4-3)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업무 3-1)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국정 70-1)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디지털포용 2-1)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업무 4-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한국판 뉴딜 3-2-3) 장애인정책종합계획(5. 동등한 사회 참여 를 위한 기반 구축)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국정 70-4) 공정경쟁 환경 조성(업무 1-③)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플랫폼 혁신을 위한 최소규제 추진 (디미생 1-1)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디미생 4-2-1)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업무 1-②)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업무 1-③)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업무 2-②)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한 혁신형 중소 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일자리 61-2) 공정경쟁 환경 조성(업무 3-③)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미디어 공공성 강화(업무 1-②)